

630.2085
L293L

(19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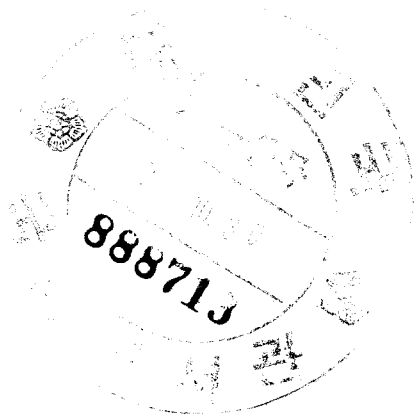
2000-11-13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개발보고서

(FIS : Farmland Information System)

2000. 12

농 립 부
농업기반공사



차 례

제1장 개 요	3
1. 추진배경	5
2. 목 적	6
3. 추진실적	7
4.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9
5. 과업기간 및 개발일정 현황	11
제2장 업무 분석	13
1. 현행업무 정의 및 분석	15
2. 전산환경분석	41
3. 자료흐름도(DFD)	42
제3장 시스템 설계	59
1. 시스템 구성도	61
2. 데이터베이스 설계	61
3. 코드 설계	64
4. 입·출력 설계	79
5. 모듈 설계	88

제4장 개발환경 및 구현	91
1. 시스템 개발환경	93
2. 프로그램 목록	94
3. 시스템 구현	98
제5장 향후추진계획	107
1. 단계별 추진계획	109
2. 활용방안	111
3. 기대효과	112
부 록	113
1. 테이블 내역	115
2. 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175
3. 지적 관련시스템 추진현황	186

제1장 개 요

1. 추진배경
2. 목 적
3. 추진실적
4.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5. 과업기간 및 개발일정 현황

여 백

제1장 개요

1. 추진배경

한정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농지전용 등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산업화에 의해 무분별하게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선행정기관의 농정업무담당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농업에 관련된 각종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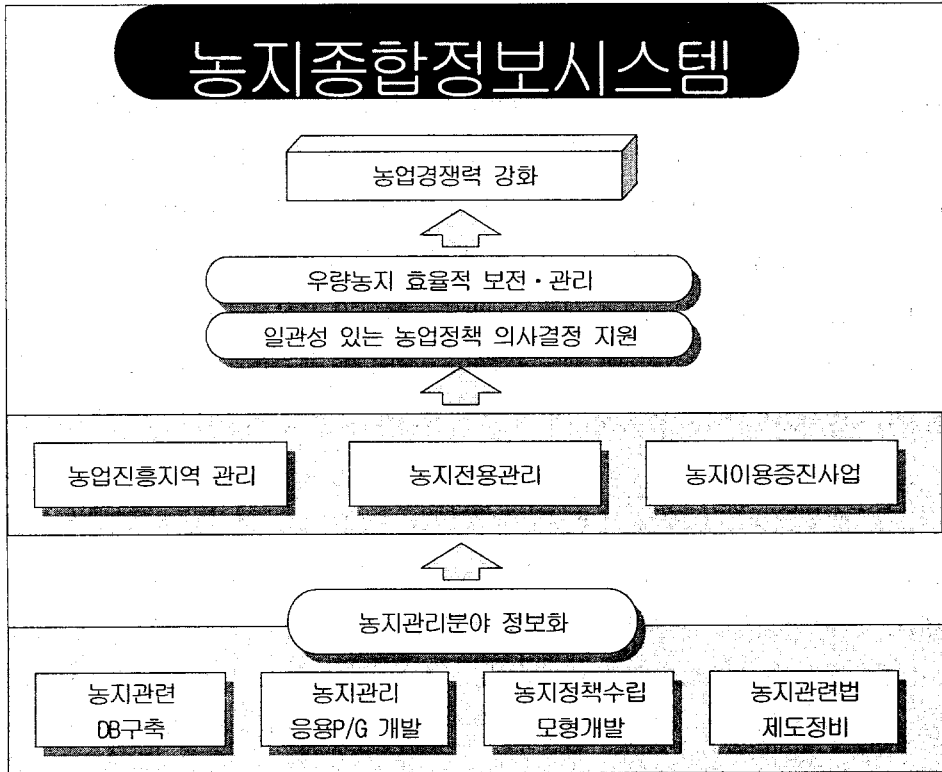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보화시스템의 보급이 최우선의 과제임에도 농지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가 부족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의 일선행정기관간의 업무 및 자료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량농지에 대한 필지별 정보를 제공하여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7년 10월부터 【농지법시행령 제32조】와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규정 제12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상세도면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농업진흥지역상세도면작성”에서 파생되어 1/5,000 도면으로 작성된 농업진흥지역도면과 관련 문자자료(농지원부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일선행정기관에서 농업진흥지역관리와 농지전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토지관리정보체계, 행정정보화사업 등 정부부처(건교부, 행자부 등)의 정보화 사업에 동참,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지관련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예산절감 뿐 아니라 지적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 업무의 효율 및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목적



- ▣ 토지관리정보체계(건교부) 지형/지적도를 기반으로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체제 구축
- ▣ 농지의 필지별 도면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지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농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
- ▣ 지적전산자료를 건교부와 공유하여 최소한의 예산 투자로 일선행정기관의 농지관리업무(농업진흥지역관리, 농지전용 인허가관리, 불법전용단속, 농지이용실태조사, 직불제사업등)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 합리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어 농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한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보전 및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3. 추진실적

가. 사업추진실적

- '97.6.27 : “농지지번도전산화계획” 확정(농지51301-620호)
- '97.9.11~'98.4.7 : 시범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대상 : 충북 진천군
 - 내용 ① 지번도 입력 및 프로그램 개발
 - ② 시스템 교육 및 업무활용
 - ③ 시범시스템 확대설치·운영
 - 진천군 관할 읍·면 사무소 시스템 설치 및 교육
- '99.11.23 : 건교부 토지관리정보체계와 공유추진
- '99.11.25 : 건설교통부 지가현황 전산도면 자료공유
- '99.12.15 :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전 협의
- '99.12.30 : 연계추진을 위한 공식문서 발의(건교부→농림부)
- 2000.5.16 : 2000년 농지종합정보화사업 시행 승인
- 2000. 7.10~현재 : 세 차례에 걸친 협의회 추진
 - 협의 : 농림부, 건교부, 농업기반공사, 국토연구원, SK C&C
 - 내용 ① 공유한계 및 범위에 대한 설정
 - ② 추진 방향
 - ③ 법적·제도적인 부분의 각 부처별 대응방법
 - ④ 사업대상선정
- 2000.10.23 ~ 11.11 : 2001년 농지종합정보사업 대상지역선정을 위한 지자체 조사 실시 (22개 시군)
- 2000.11.28 : 농지정보화 중장기계획에 대한 협의회 개최
 - 내용 : 농지종합시스템 시연 및 부처별 자료공유 및 계획에 대해 협의
 - 참석 :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국토연구원, 삼성SDS(주), SK C&C

제1장 개요

나.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추진실적

□ '99년까지 실적

년 도	내 역	비 고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구축 ○ 응용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역 : 충북 진천군 -수치지도 95매 입력(1/5,000)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시스템 운영 및 보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설치 -시스템 교육 및 지원 -운영프로그램 보완개발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프로그램 보완 ○ 사업활용방안 모색 ○ 관련기관 공유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허가프로그램 개발 -농지지번도프로그램 보완개발 -통계분석프로그램 보완개발 -각종 기능보완 -읍·면 사무소에 확대운영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 2000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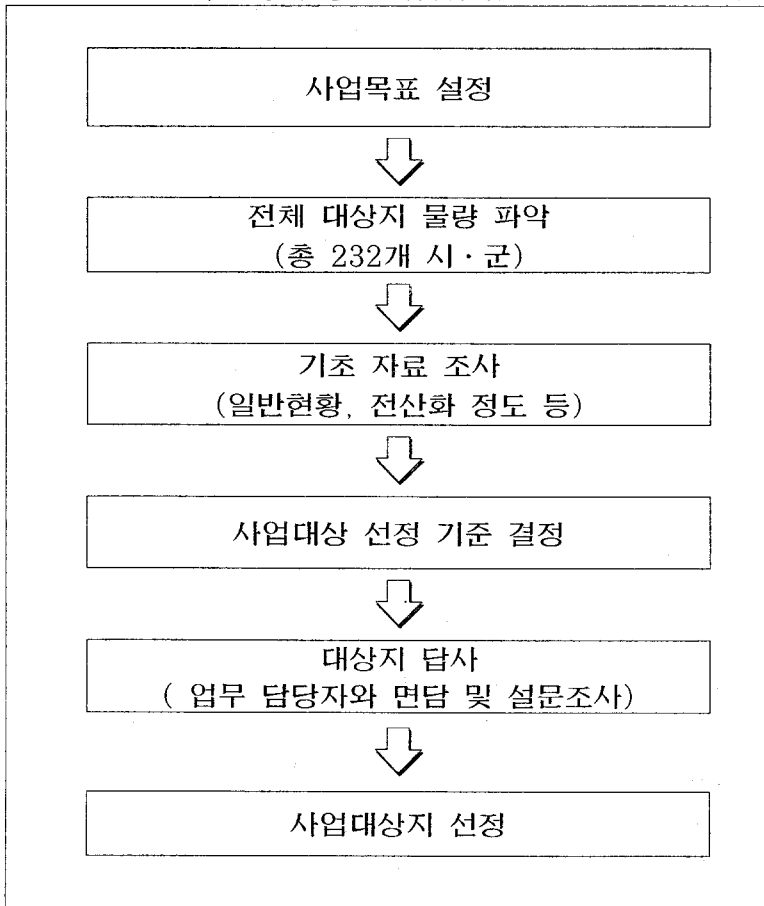
- 기존 PC Standard-Alone 모듈에서 클라이언트/서버 (C/S) 모듈로 프로그램 개발
- 건교부 자료활용을 위한 DB연계 프로그램 보완
- 농업진흥지역 관리·검색 프로그램 개발
 - 농업진흥지역 토지조서 관리 : 지정·변경·해제
 - 농업진흥지역 검색 : 지번, 지정사유/일자별, 지목별, 면적별 검색
- 농지전용 관리·검색 프로그램 개발
 - 농지전용 허가 입력, 농지전용 사후관리
 - 농지전용 검색 : 지번, 허가유형별, 허가사유별, 허가일자별, 지목별, 면적별, 허가자별 검색
- 각종 통계현황 및 보고서 출력프로그램 개발

- 농업진흥지역별 현황 / 공부상/사실상 지목별 현황, 경작구분(자경·임대·휴경)별 현황, 농지면적별 현황
- 농지전용대장 출력, 농지전용상황(반기·연말) 보고 출력
- RGIS 통합운용시스템과 연계개발
 - RGIS 주제도 검색 (현황 및 중첩)

4.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가.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

- 1) 지적관련 전산도면자료 구축완료 여부
- 2) 시스템(H/W, S/W, Network) 환경 구비여부
- 3) 농지전용등 농지관리업무가 빈번한 곳
- 4) 지방자치단체장, 담당자 등의 사업의지



나. 선정기준 적용의 합리성

- 사업대상 시·군 선정(총 232개 시·군)
- 1단계(1997년-1999년) : 충북진천군
- 2단계(2000년) : 3개 시·군 (김해시, 홍천군, 순창군)
- 3단계(2001년~2004년) : 전국 확대 실시

다. 선정기준과의 부합 논거

- 건교부 토지관리정보체계 시범지역 선정으로 기 구축된 지적관련 전산도면을 활용함으로써 예산 중복 방지
-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H/W)을 공동 이용
-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사업의지 파악

5. 과업기간 및 개발일정 현황

단 계 별 주 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간	1~4	5	6	7	8	9	10	11	12	1	2	3	
1. 업무분석 및 DB 재설계														
2. DB 수정(Stand alone → C/S)														
3. 자료검색 P/G 보완														
3.1 농지전용 자료검색														
3.2 농업진흥지역 자료검색														
3.3 직접지불 대상농지 자료 검색														
3.4 소유자별·농가주별 자료 검색														
4. 통계현황 P/G 보완														
4.1 농업진흥지역별 현황														
4.2 지목별 현황														
4.3 자경·임차별 현황														
5. 각종출력 P/G 개발														
5.1 농지전용 관련 출력														
5.2 농업진흥지역 관련 출력														
6. 자료관리 P/G 보완														
6.1 농지전용 자료관리														
6.2 농업진흥지역 자료관리														
7. 사용자 지침서 작성														
8. 시스템 설치 및 사용자 교육														
9. 보고서 작성														
10. 시스템 운영														

제1장 개요

□ 개발팀 현황

소 속	직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정보관리실	3	장 성 우	사업총괄	
"	4	이 영 배	자료공유협의 및 자료구축 관리	
"	4	김 현 정	응용 P/G 개발	
"	4	김 영	응용 P/G 개발	

제2장 업무분석

1. 현행업무 정의 및 분석
2. 전산환경분석
3. 자료흐름도(DFD)

여 백

제2장 업무분석

1. 현행업무 정의 및 분석

가. 농업진흥지역지정

- 도입배경 : 과거 필지별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필지별로 우량, 불량농지를 구분하여 우량농지를 구분하여 우량농지만 보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면적 이상으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권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보전하는 한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전용토록 함으로써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용증가에 계획적으로 대응코자 도입한 것임.
- 지정대상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 지정기준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농업진흥구역은 일정규모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해 농업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나. 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제도 : 농지를 농업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6ha(진흥지역은 2ha)미만의 허가권한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위임되어 있음)

농지전용신고제도 : 농민의 소득증대, 생활편의를 위하여 농지를 신고로써 전용할 수 있도록 함.

- 즉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양어장,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은 일정면적 이하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만하고 농지전용

※ '97. 1. 1부터 진흥지역에서는 신고제 대부분을 허가제로 전환

다.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농지법 제2조제9호)
- ※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수경재배시설 및 그 부속시설(보일러실, 작업장 등 농작물 재배용 시설내 또는 그 시설과 연접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의 설치행위와 농지에 부속한 농막(숙식에 제공되는 관리사는 제외됨) 또는 간이 퇴비장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
-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저수지 제방이나 수면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님
- 농지개량시설의 “부지”가 농지이므로 제방 자체는 농지가 아님에 유의

라. 농지전용 허가제도 개요

(1) 허가신청자

- 농지전용허가신청은 농지를 전용(轉用)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농지법 제36조 제1항 본문)
-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허가 신청하여서는 아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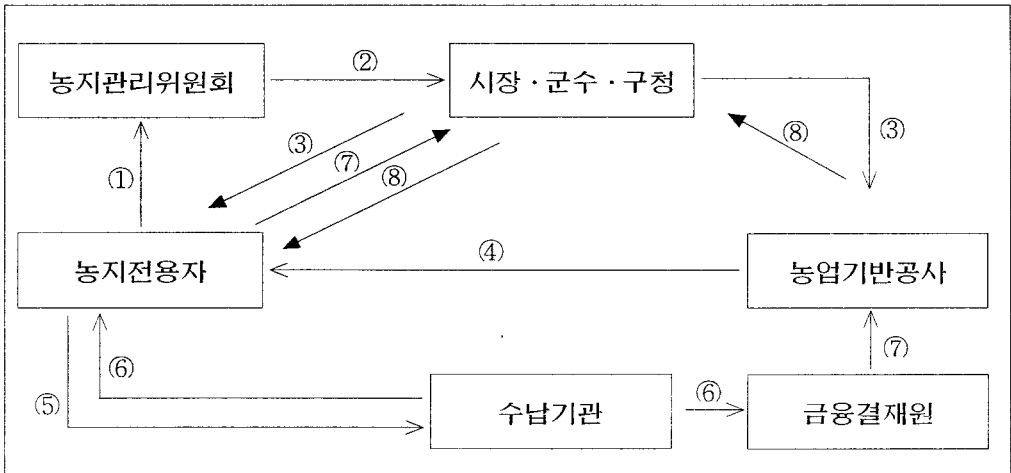
(2)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는 농림부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함)에게 위임하여 처리
- 근거 : 농지법시행령 제7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

농 지구 분	농림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2만㎡이상	2천㎡~2만㎡	2천㎡미만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6만㎡이상	6천㎡~6만㎡	6만㎡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중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시행령 제72조제2항단서)
- 농림부장관(위임받은자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산업단지, 유통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준도시지역등에서의 전용허가(협의)권한은 다음과 같이 위임('99.4.19 개정)
 - 시·도지사 : 10만㎡이상 전부
 - 시장·군수·구청장 : 10만㎡미만
- ※ 전용목적사업이 실현되기 이전에 농지를 추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 전용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위임범위 구분 적용

〈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인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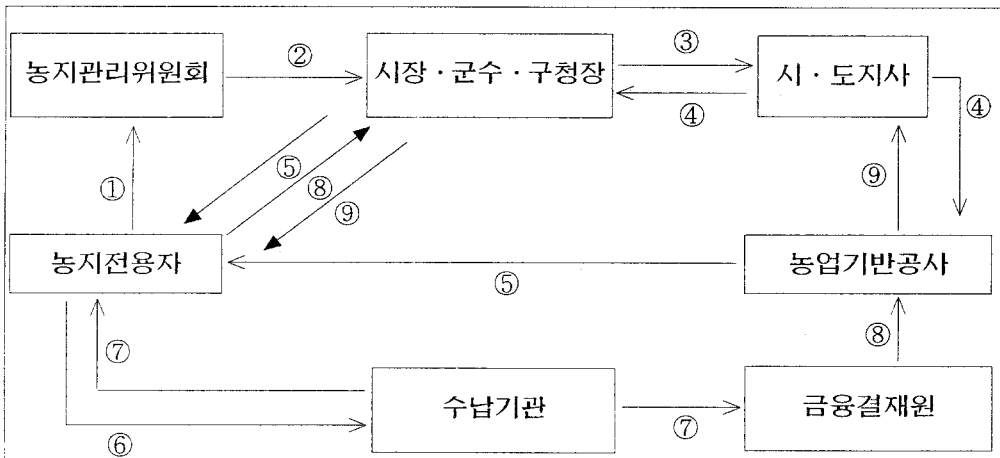


- ① 허가신청서 접수
- ②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후 송부(확인서 첨부)

제2장 업무분석

- ③ 검토·심사후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 농지전용허가시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 ④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 ⑤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
- ⑥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 수납기관은 금융결재원에 농지조성비등 지로장표 송부
- ⑦ 영수증 제시
 - 금융경재원은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조성비등 처리내역 통지
- ⑧ 허가증 교부(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 농업기반공사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조성비등 수납통지

〈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 ① 허가신청서 접수
- ② 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송부(확인서 첨부)
- ③ 허가신청서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에 시장·군수 검토의견 및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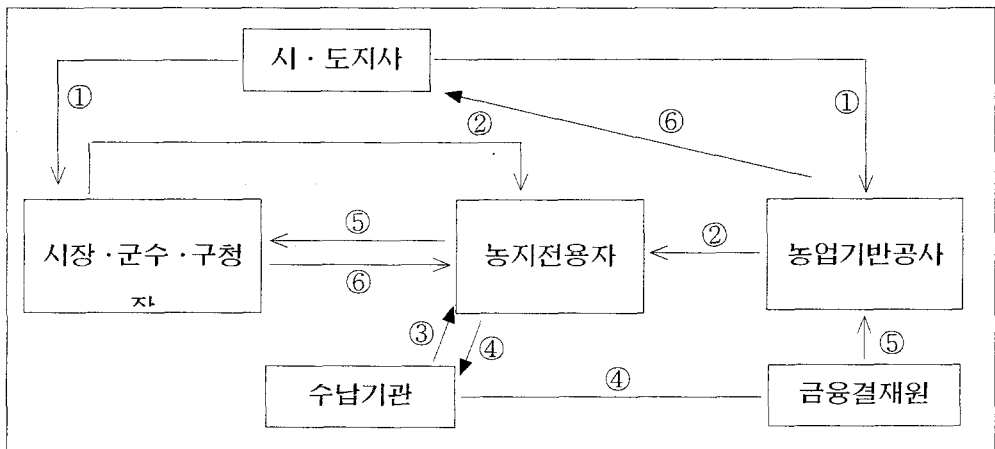
- ④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허가시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자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사실 통보 농업기반 공사가 농지전용자에게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 ⑥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
- ⑦ 농지전용자에게는 영수증 발급, 금융결재원에 지로장표 송부
- ⑧ 영수증 제시, 농지조성비등 처리내역 통지
- ⑨ 허가증 교부(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관할청에 농지조성 비 등 수납통지

「참고」 허가신청서류를 시·도에 송부할 때 일선 시·군 농지보전부서(산업과)에서 확인 또는 첨부할 서류(신청자 첨부서류 이외)

- 농지개량조합장 의견서(농지개량조합의 수혜지역인 경우)
- 농지개량시설부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 부과명세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수수료 납부
- 시장·군수 심사의견서

※ 훈령 「발표1」 농지전용허가·협의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참조

〈 허가증 교부(시·도지사 허가시, 통지납입기준) 〉



제2장 업무분석

① 허가사실 통보

- 농업기반공사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 의뢰
-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사실 통보 및 허가증 송부

② 농업기반공사는 납입통지서 발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사실을 통보

※ 허가사실 통보시 「농지조성비등을 납부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함께 통보

③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④ 농지조성비등 수납(금융기관)

- 농지전용자에게 납입영수증
- 금융결재원에 지로장표송부

⑤ 허가증 교부 요구(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영수증 지참)

- 금융결재원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⑥ 허가증 교부

- 농업기반공사는 관할청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수납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자가 제시하는 납부영수증을 사본하여 허가사실 통보공문(시·도지사가 발송하여 접수됨)에 편철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 : 농지전용자가 제시하는 납부영수증과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농업기반공사에 납부사실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시는 허가사실을 농지전용자에게 통보한 후 허가증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마. 농지전용협의

〈 유 의 사 항 〉

-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협의의 성격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① 농지전용협의
 - 근거 :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의제근거가 있는 개별 법률(약 50개)
 - 사례 :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농지전용협의,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등
- ②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구역 등 지정협의 포함)
 - 근거 : 국토이용관리법(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
 - 사례 : 도시·준도시지역 지정, 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지정협의
- ③ 기타 개별법에 의한 지구·구역 등 지정협의
 - 근거 :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등
 - 사례 : 공원구역지정,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협의 등
- 그중 ②, ③은 농지전용협이가 아님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
- 농지조성비 등 부과기준일은 ①의 농지전용협의후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일 등이 됨

(1) 개발용도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농지전용 일괄허용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당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농지전용협의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신설·확장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재정비)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결정(공원구역내에서의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

제2장 업무분석

(2)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농지전용 허가 등 의제처리

-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
-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소재 농지에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의제(농지법 제36조제2항)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의제(건축법 제8조)

(3) 근거법령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는 두가지 종류가 있음
- ①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리 농지전용협의(법 제36조제2항제1호)
- ②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농지전용협의(법 제36조제2항제2호)

(4) 다른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 건축법 등 각 개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하기전에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농지전용허가의제), 두가지 종류가 있음
- ① 일단의 토지를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각종 용도지구로 미리 지정한 후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기전에 농지전용 협의(예:산업단지·택지 등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등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 ※ 용도지구지정 협의는 농지전용협의를 아니므로 동 협의시에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② 용도지구 지정없이 바로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기전에 농지전용 협의(예: 건축허가·공장설립승인 등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5) 농지전용 협의시의 효력발생

- 농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도시계획 구역내 농지전용협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음(농지전용허가 의제)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허가·신고)를 거쳐야 함
- 농지전용협의를 한 경우에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등 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농지전용 허가·협의의 효력이 발생함(농지법 제40조 제1항)

(6) 인·허가 등 취소시의 농지전용 관계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후 그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될 경우에는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됨
 - 따라서 기 납입한 농지조성비 등은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또한, 상기 토지를 제3자가 인수하여 계속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농지전용허가(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 농지조성비 등은 전용허가일 또는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일 등을 기준으로 다시 부과해야 함
- ※ 승계처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제2장 업무분석

(7) 협의절차

○ 농지전용협의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농지법시행령 제39조)

①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 신청(사업시행자 → 주무부장관·자치단체장)

② 농지저농협의요청(주무부장관·자치단체장 → 협의권자)

※ 주된 인·허가권자가 요청(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③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요청(협의권자 → 농지관리위원회)

〈다음의 경우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생략가능〉

-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

-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99. 4. 19 신설〉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99. 4. 19 신설〉

※ 상기 사항도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음

④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확인서 송부(농지관리위원장 → 협의권자)

⑤ 농지전용심사 및 협의의견통보(협의권자 → 요청기관, 관할 시·군)

(8)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전용) 협의

□ 도시계획변경(제정비)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 관련규정(농지법 제36조 제2항 제1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다른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 협의권한위임(농지법시행령 제72조)

○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부지

— < 참 고 > —

- 도시계획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중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결정함
-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함.(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2호)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 ① 주거지역 :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전용·일반·준주거지역
 - ② 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전용·일반·준공업지역
 - ④ 녹지지역 : 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에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제2장 업무분석

- 농림부장관 : 농지 6만㎡이상
- 시·도지사 : 농지 6만㎡미만
- 시장·군수 : 협의권한 없음
- ※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농지전용협의를 제외한 농지전용협의 (법제36조제2항 제2호의 녹지지역내 농지 전용협의 등) 권한은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과 동일함

〈 유 의 사 항 〉

도시계획재정비를 함에 있어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권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 협의하여야 함

□ 협의시 구비서류

- ※ 훈령 <별표4>중 “3. 농지전용 협의”(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시설결정) 참조
- ① 도시계획변경(안) 1부
- ② 도시계획변경도면 1부 훈령 “도시계획도면작성요령” 참조
- ③ 도시계획구역내의 용도 지역별 현황
- ④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농지편입현황
- ⑤ 도시계획구역내의 인구밀도
- ⑥ 시·도지사 종합심사의견서 1부 (농지보전부서)
- ⑦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확약서
- ⑧ 초지·목장용지 및 농지개량조합 수혜지역내의 농지 편입 여부
- 편입시 그 편입조서, 조성년도 및 조합장 의견서
- ⑨ 시장·군수의 심사의견서(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⑩ 입안자의 입안사유
- ⑪ 논경지정리·밭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 수혜지역 농지편입 여부
- 편입시 편입농지조서, 사업시행년도

□ 협의시 심사기준

-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시에도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하여야 함(농지법시행령 제39조제3항)

(9) 녹지지역내 농지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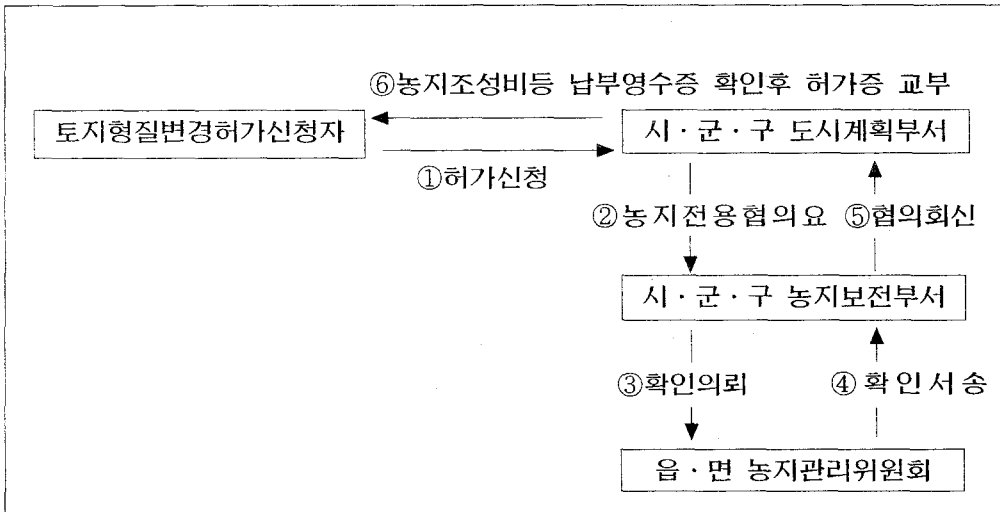
□ 관련규정(농지법제36조제2항제2조)

-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

-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죽목의 벌 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놓는 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10) 농지전용협의절차



(11) 신청서류, 심사기준 등

- 신청서류, 심사기준은 허가의 경우와 동일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생략
 -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농지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4호)
- 신고전용대상시설 처리절차
 - 녹지지역에서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용대상시설인 경우 농지전용협의(허가)가 가능하나, 농지조성비 감면등 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신고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동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포함)대상에서 제외되는 형질변경 등 행위중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농지전용 허가대상임(농지법 제36조제1항)
-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행위중 농지법 제2조 제9호의 “농지전용”에 해당하는 행위

- ① 높이 50센티미터미만의 토지를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의 토지를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 ③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①~④도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므로 농지전용협의 대상임)

바. 농지전용신고

(1) 제도도입 취지

- 농지전용신고제도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용시설 및 농산물산지유통·가공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고자 도입('90. 4.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도입, '90. 8. 8. 동 법률시행령제정 공포로 시행)

(2) 근거법령

- 종전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동 법률시행령 제5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7조의 2('95. 12. 31까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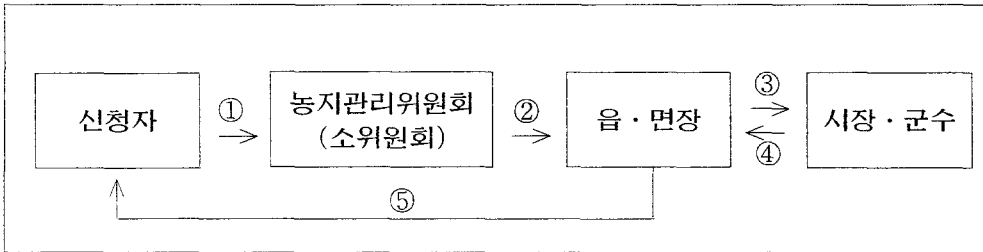
※ 농지의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의 전용사항은 신고사항으로 변경

- 현행 : 농지법제37조, 동 법률시행령 제40조·제4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0조

(3) 신고수리권자 및 절차

- 법상 신고수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신고대상시설중 조례·규칙 등을 통하여 사무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 수리권자가 됨

〈 신고수리절차 〉



- ①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② 농지관리위원회는 확인후 읍·면·동장에게 송부
- ③ 시장·군수에게 송부
- ④ 시장·군수가 신고서를 확인·검토한 후 처리결과 통보
- ⑤ 신고수리 결과 통보 및 신고수리증 교부

(4) 신고시 첨부서류

- 근거 : 농지법시행규칙 제30조
- ①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 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③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④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5) 신고시 확인 및 검토사항

- 농지전용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확인해야 함(농지법시행령 제40조, 동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

- ①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②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③ 대체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④ 용수의 취수로 인하여 농수산업과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 지역실정·지형 등에 정통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류지역의 농업용수오염, 용수로 및 농로의 단절이나 훼손, 용수의 취수로 인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고갈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피해방지계획 유무를 확인
- 농지전용신고 수리권자는 농지관리위원장으로 부터 농지전용신고서가 송부될 경우 신고대상자 및 대상시설 여부 등 신고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증을 교부함
-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
- ※ 신고제도의 본질상 농지관리위원회의 반대 또는 농지보전가치가 있음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음

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개요

타용도 일시사용의 개념

-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타용도 일시사용 이라하며 그 절차는 다음 두가지로 구분 됨

- 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②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2)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농지

- 종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제2장 업무분석

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일시전용허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음

- 다만,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는 일시전용“협의”대상에 해당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농지의 일시전용허가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목적사업에 3년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 < 개정 '92. 2. 22. 제 1397호, '94. 4. 9. 제14205호 >

-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절차를 농지전용절차와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한 모든 농지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대상이 됨.

(3) 허가(협의)권자

-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권자는 장관이나 농지법시행령 제 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음
- 대상농지가 20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 다만, 3,300㎡이하의 일시사용허가 권한은 시·군·구의 규칙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 가능(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제38조)

(4)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허가대상(농지법 제38조제1항)

-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년 (②의 경우에는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

- ①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②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③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 및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④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99. 4. 19신설)

〈 유 의 사 항 〉

- ① 간이어업용시설(간이양어장·간이양식장 등)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 ② 객토·성토 등으로 농지개량을 하는데 필요한 토석을 다른 농지에서 채굴하는 것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이나 당해 농지의 개량을 위해 당해 농지에서 자갈을 골라내거나 객토·성토하는 행위는 “농지개량행위”로서 허가없이도 가능함
- ③ 주목적 사업의 부지로 계속사용하는 행위(예 : 공장운영에 필요한 원료 및 제품적치장으로 사용)는 전용허가 대상임

※ 허가기간 연장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의 경우 그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가능

(5) 첨부서류

-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시사용허가신청서(규칙 제27호 서식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①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②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 ③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 ④ 당해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⑤ 농지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 ⑥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한다)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한함

(6) 심사기준

- 허가권자는 일시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
 - ①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인하여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②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③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당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절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 여부
- ④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⑤ 당해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⑥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타당성 여부

※ 심사기준 적용시 주요유의사항 : 「허가 심사기준」을 참조

(7) 복구확인(훈령 제13조)

- 관할청이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조사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농지가 허가 또는 협의할 때 부여한 조건에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농지가 당초 부여한 조건에 적합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됨

〈 유 의 사 항 〉

-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신청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도록 하여야 함
 - ① 복구계획서 : 사용할 흙의 종류 및 매립·성토의 높이와 취토원의 소재지 (필요시 복구설계서 첨부)
 - ② 복구비용명세서 : 산정근거 (사용할 흙의 수량, 단가, 운반비 및 거래 실례가격 등)
- 대상농지는 사업내용과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활용하게 하여야 함
- 복구비용이나 복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나 협의를 하여서는 아니됨
- 허가증에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명시하여 일시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복구되도록 하여야 함
 - ①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및 복구의 기한(영농기 도래전 복구를 원칙으로 함)
 - ② 복구의 방법 및 정도(골재 채취의 경우 당초의 높이와 같게 복구함을 원칙으로 함)
 - ③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의 조치사항
-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 하여야 함

(8)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협의대상(농지법 제38조제2항)

- 일시사용 “허가대상” 이외에도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및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됨

- 종전 농지보전법에서는 일시전용허가 대상과 협의대상이 동일 하였으나 농지법 시행으로 변경되었음에 유의(1. 나 참조)
- 따라서 관할청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3년이내의 기간 동안 당해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으로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예 : 도시계획 법에 의한 허가없이도 가능한 물건적처행위 등)는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전용허가(일시사용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첨부서류

-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시사용협의요청서(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①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② 타용도 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 ③ 당해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고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
 - ④ 농지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아.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농지법 제42조, 동시행령 제60조, 동시행규칙 제47조

제2장 업무분석

(1) 승인대상

- 다음의 토지중 당초의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①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포함)를 받아 전용된 토지
 - ② 농지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받아 전용된 토지
 - ③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신고전용된 토지
- ※ 전용허가를 받은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농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99.4.19 신설)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②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③ 농지법시행령 제49조(허가제한시설)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 각호내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를 달리 하는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④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자

- 용도변경승인 신청은 당초 농지를 전용한 자 여부에 관계없이 전용된 농지를 당초 전용목적 사업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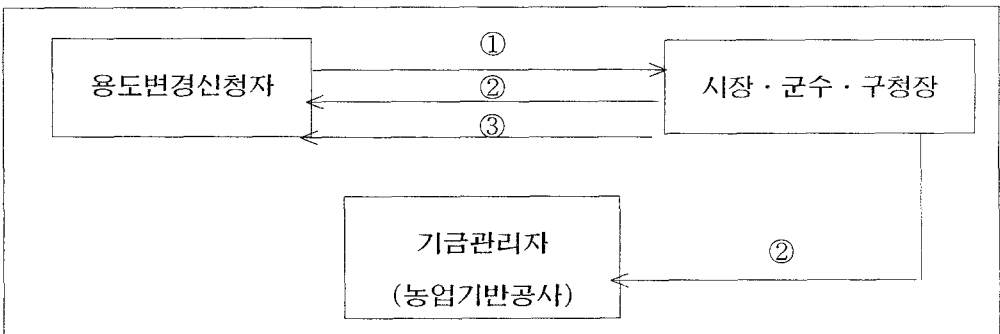
(3) 승인권자

- 용도변경승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임(농지법 제42조제1항)

(4) 용도변경승인신청시 구비서류

- 용도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① 사업계획서
 - ② 당해 토지의 지적도·임야도 등본
 - ③ 피해방지계획서

(5) 용도변경 승인절차



- ① 용도변경승인 신청
- ② 용도변경승인여부 결정 통보
 - 승인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결정 통지
- ③ 승인서 교부(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

(6) 심사기준

- ①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을 준용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기준을 적용하기에 앞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등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나 농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함

제2장 업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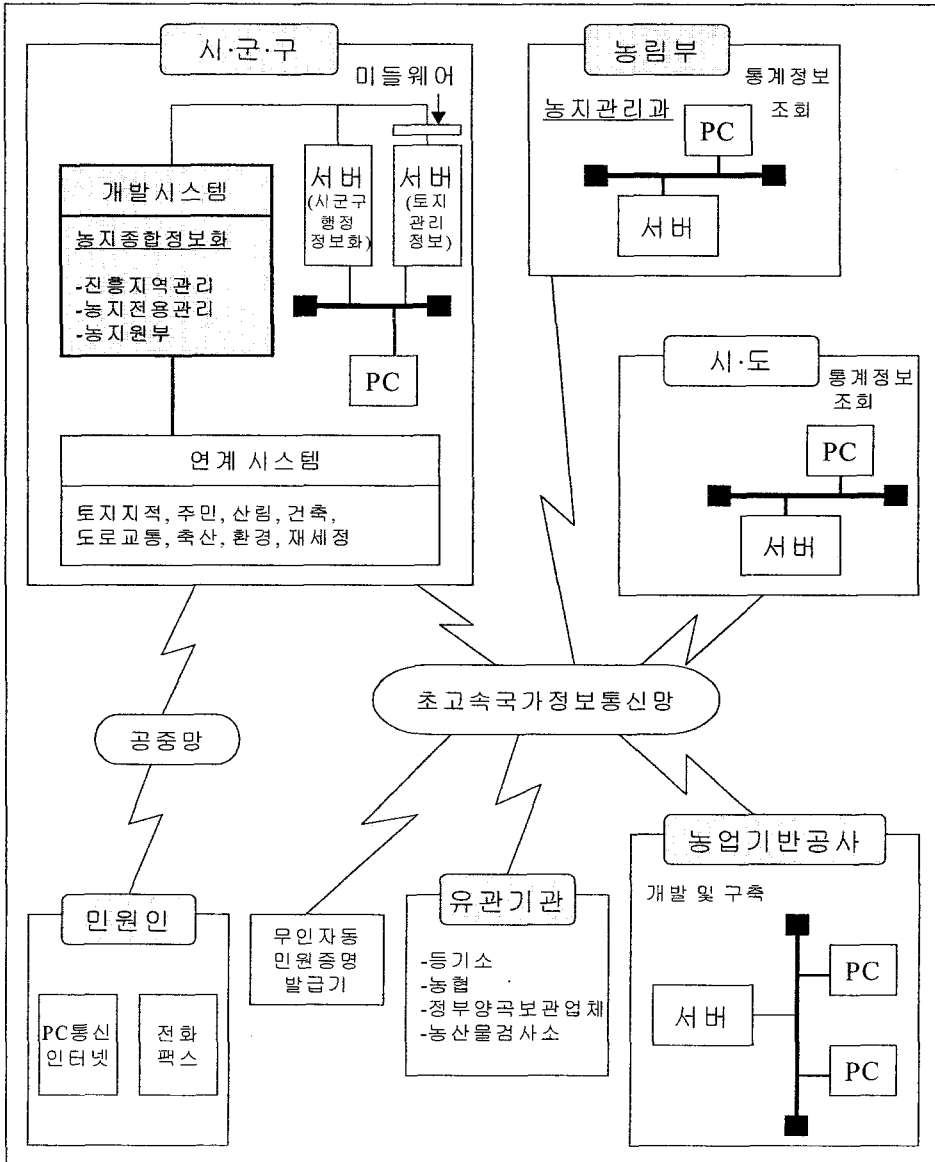
- ※ '96.12.31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에 대한 용도변경시의 허가 제한면적(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은 '96.12.31 당시의 기준을 적용('99.4.19 개정)
- '96.12.31 당시의 허가제한면적 : 공동주택만 1만㎡ 이하로 제한

(7) 용도변경승인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 ①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시설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농지법 제42조제2항)
- 단가 : 당초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당시의 단가를 적용('99.4.19 개정)
- ② 다만, 당초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날(도시계획구역내 개발용도지역등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의 경우는 실제 농지를 전용한 날)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시행일('92.2.22)이전인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시 전용부담금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2. 전산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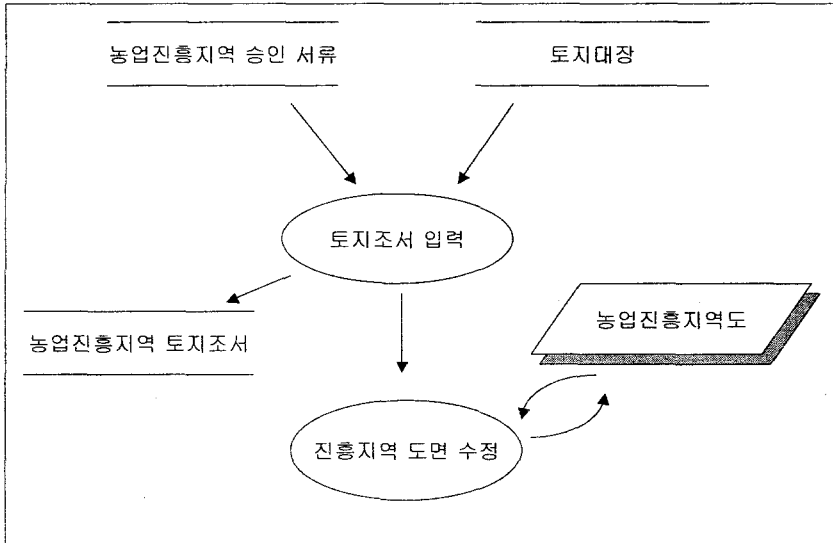
□ 시스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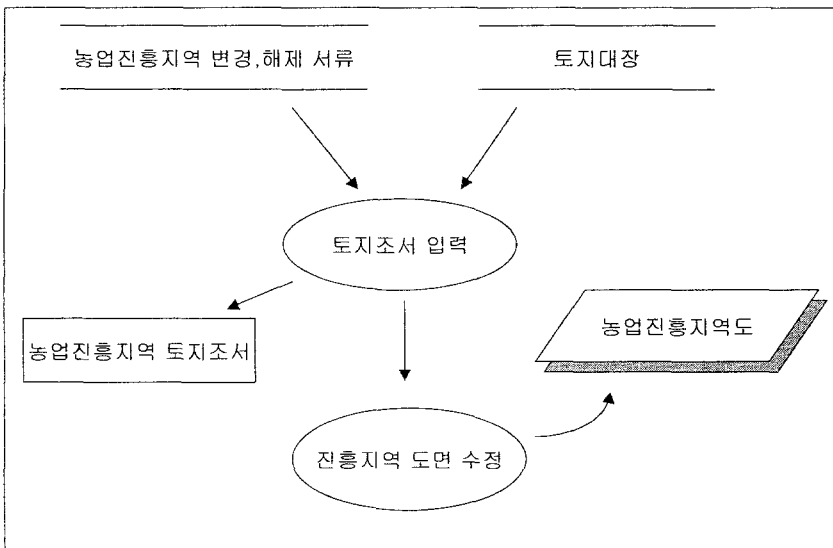
3. 자료흐름도(DFD)

가. 자료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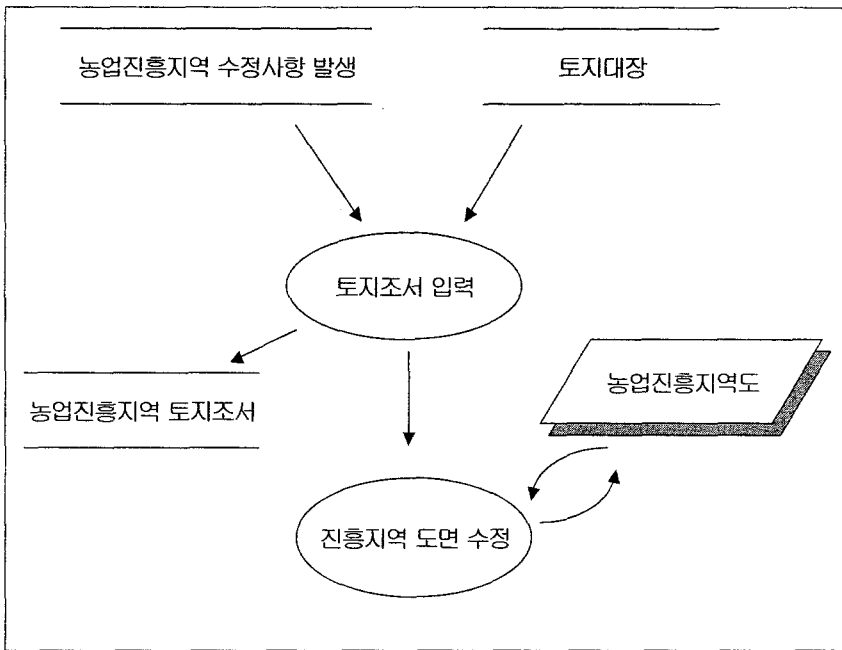
(1) 농업진흥지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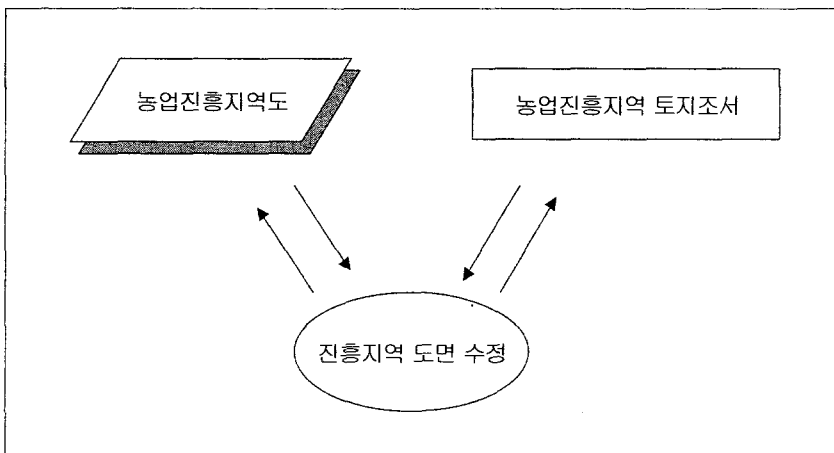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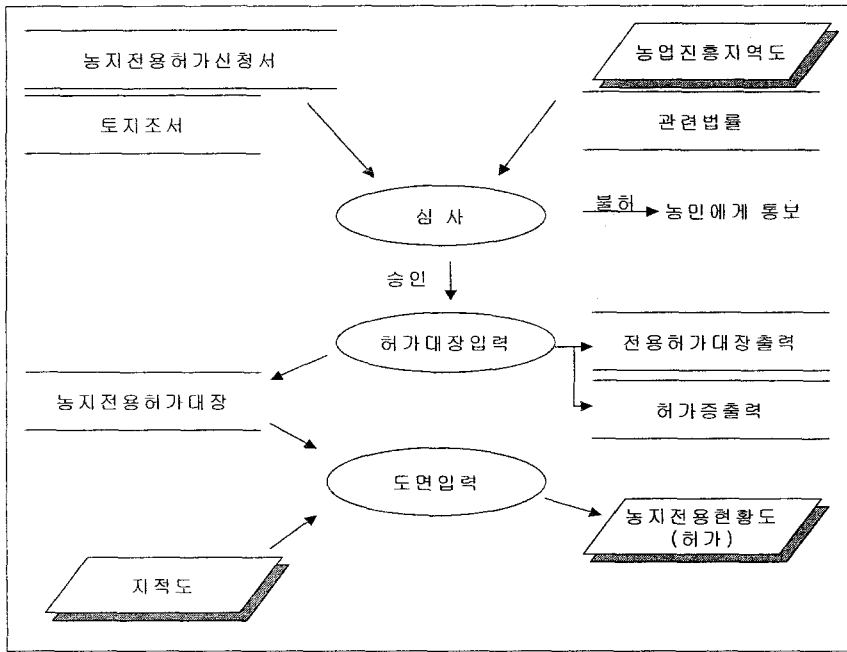
(3) 농업진흥지역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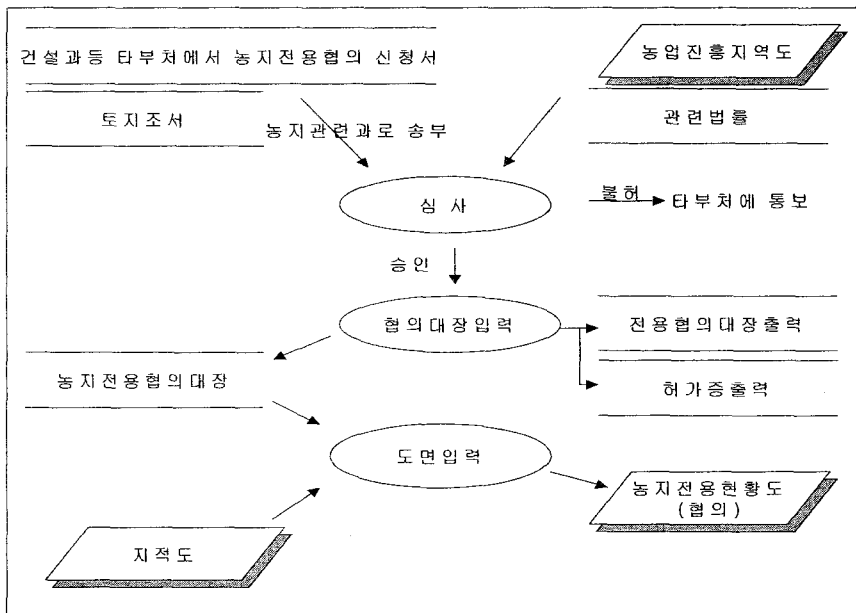
(4) 농업진흥지역 도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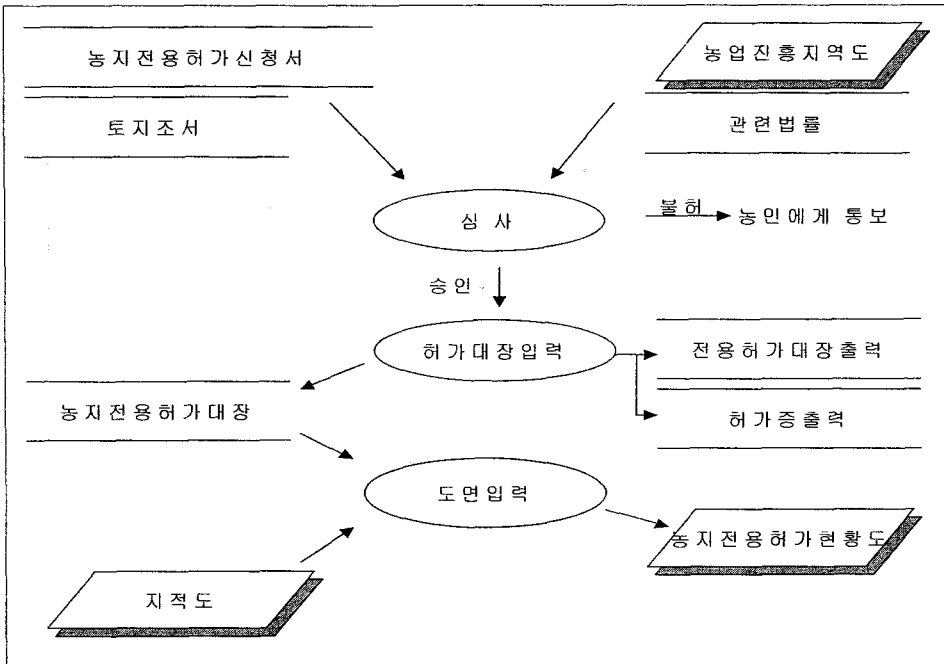
(5) 농지전용 허가대상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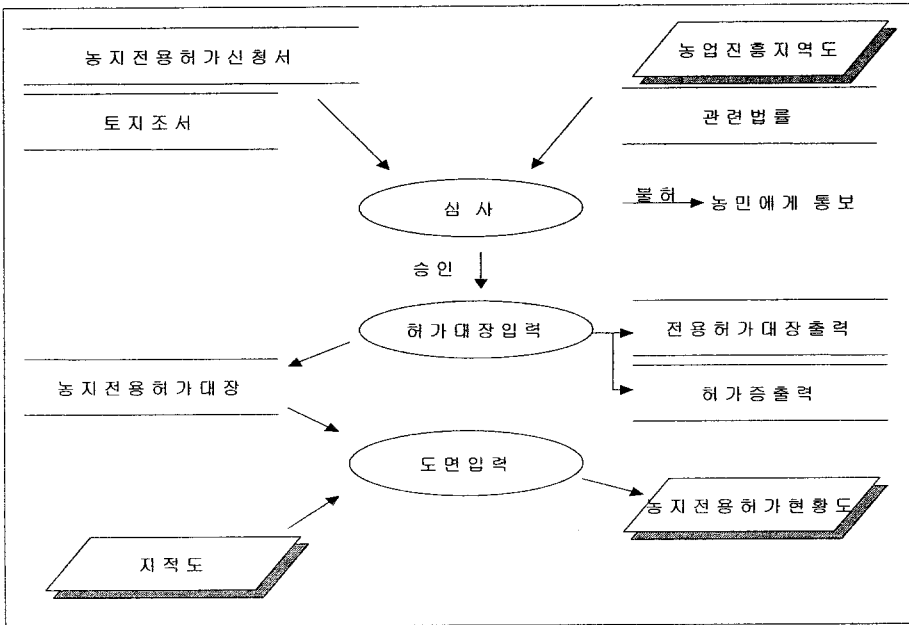
(6) 농지전용 신고대상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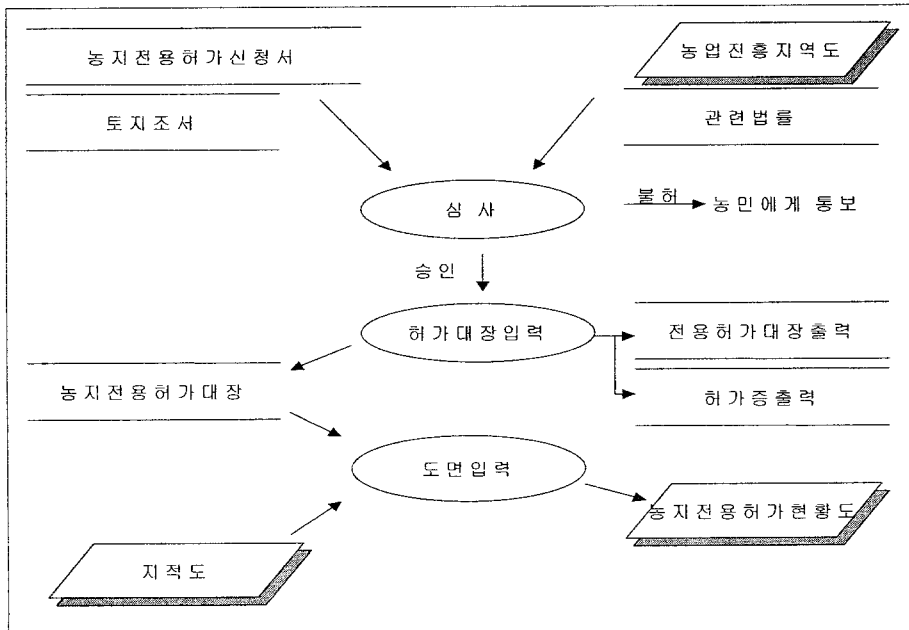
(7)농지전용 협의대상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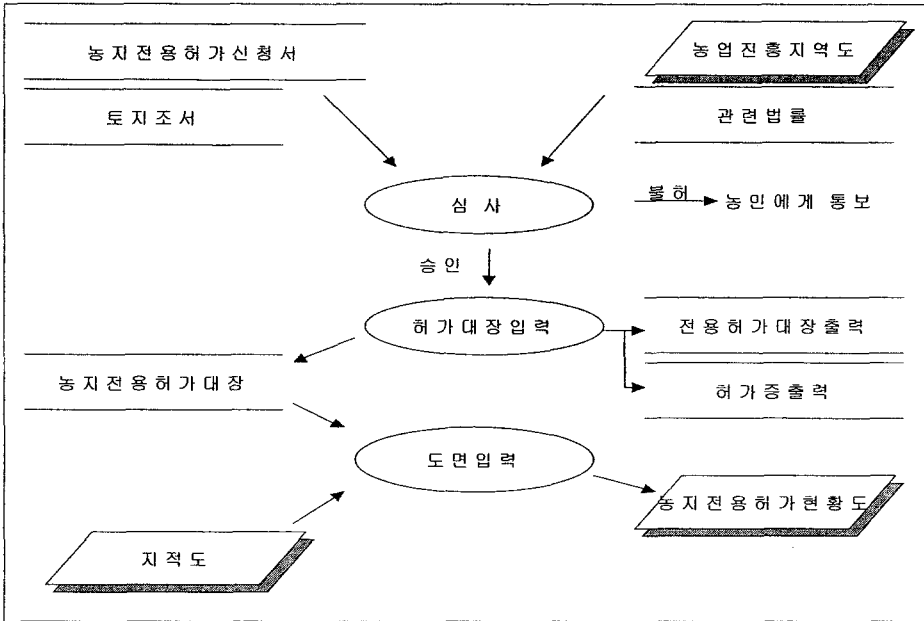
(8)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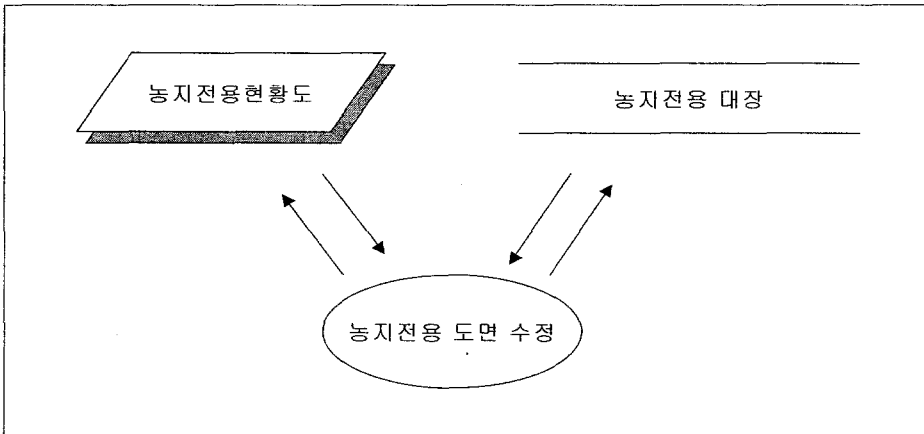
(9)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입력



(10)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대상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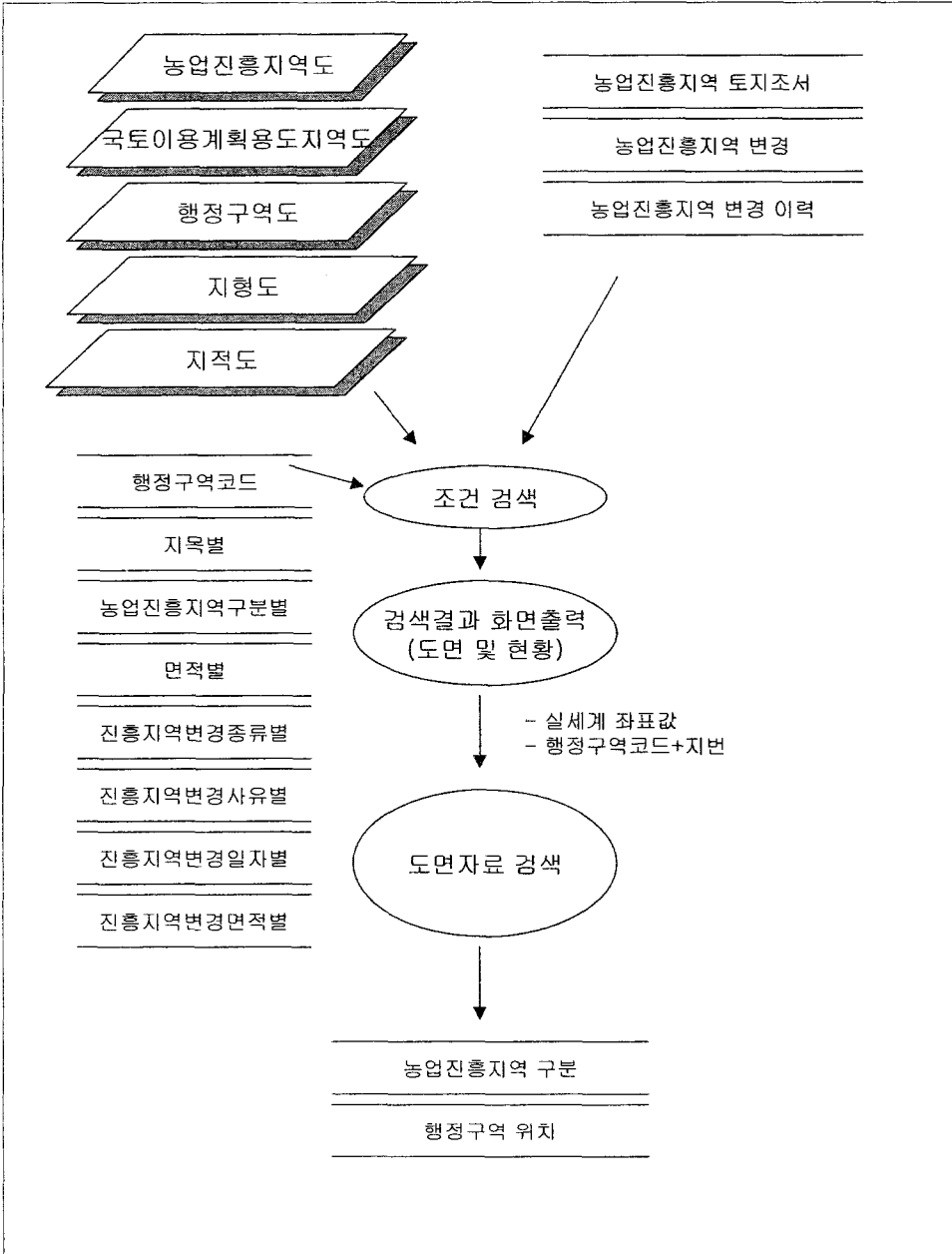


(11) 농지전용 도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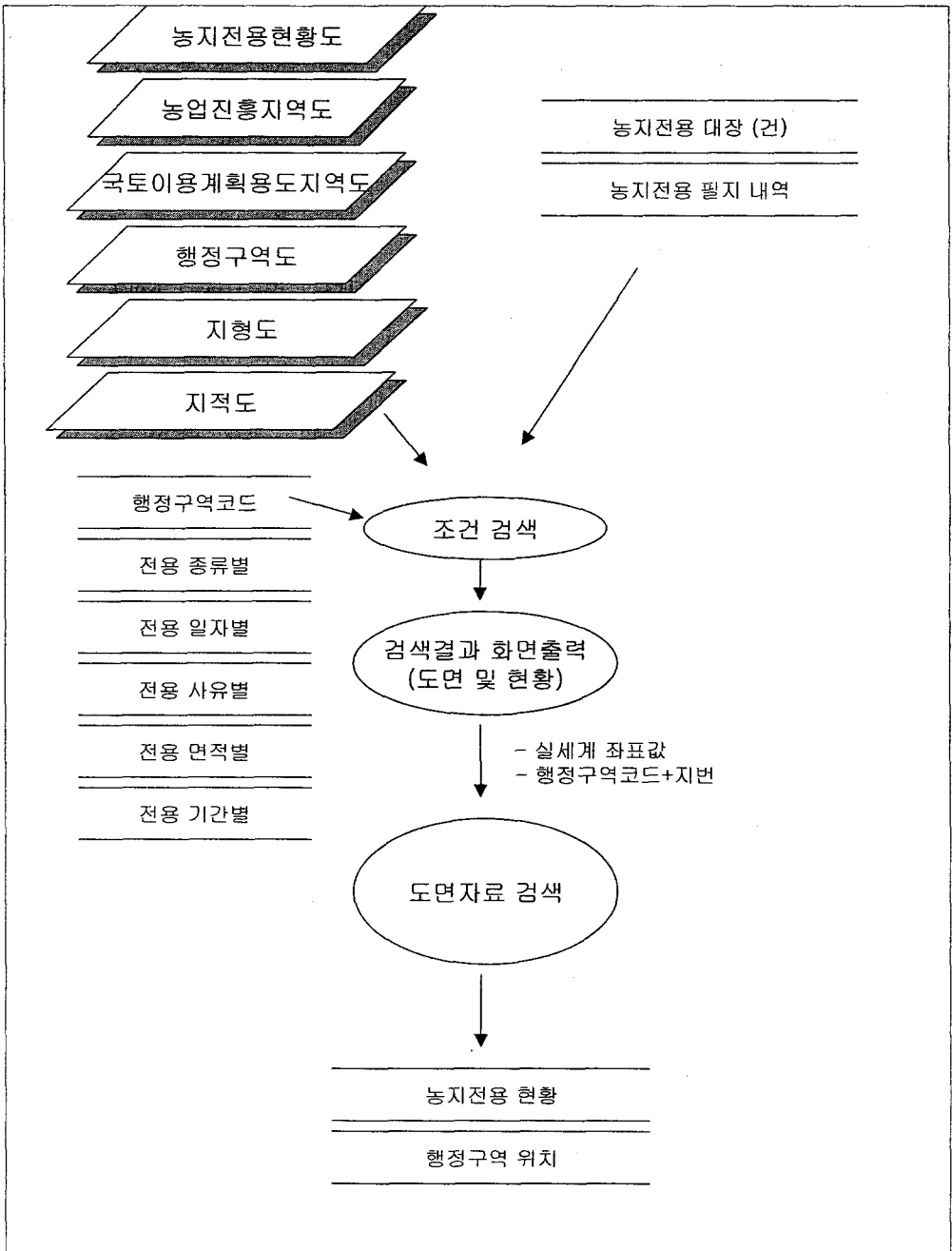


나. 자료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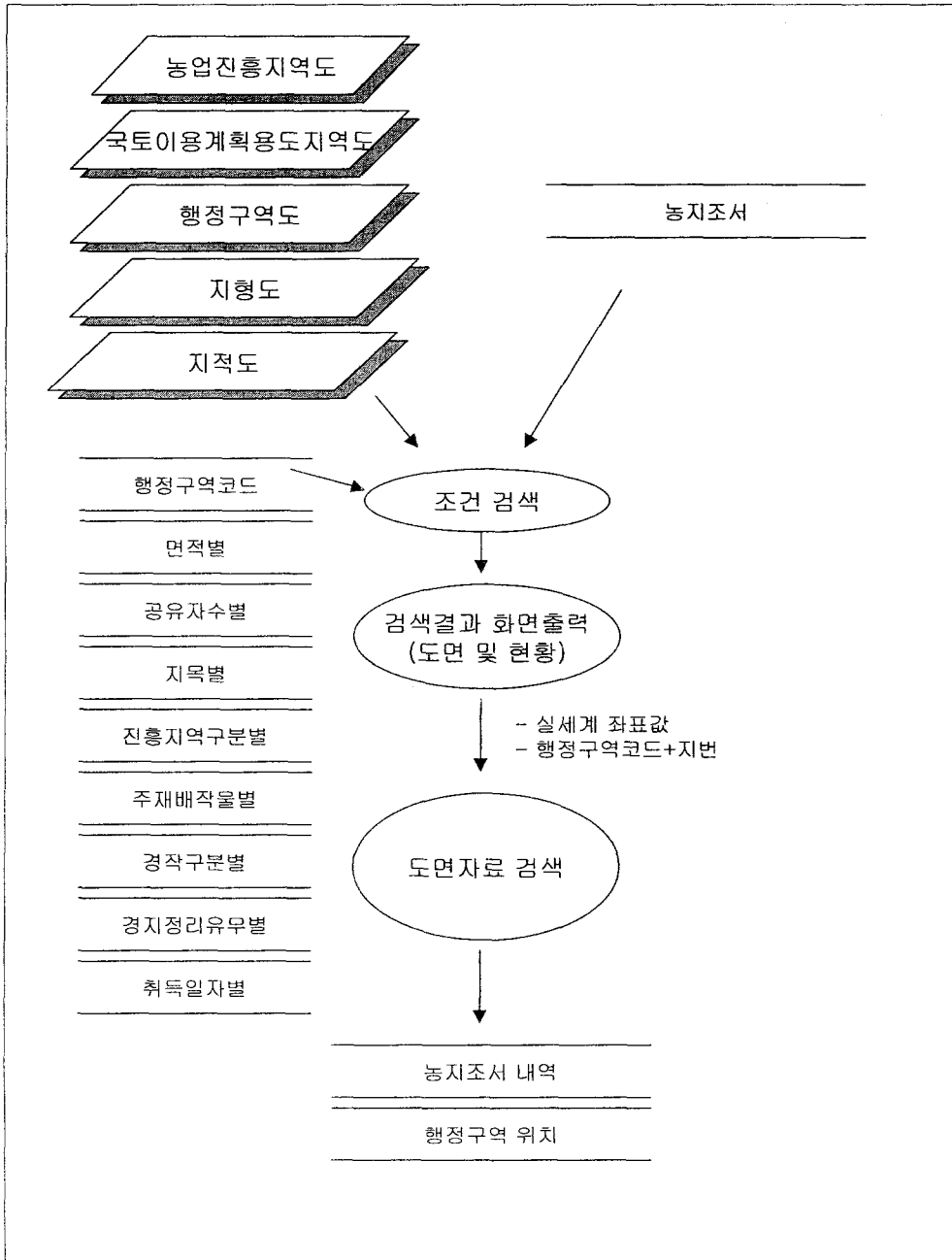
(1) 농업진흥지역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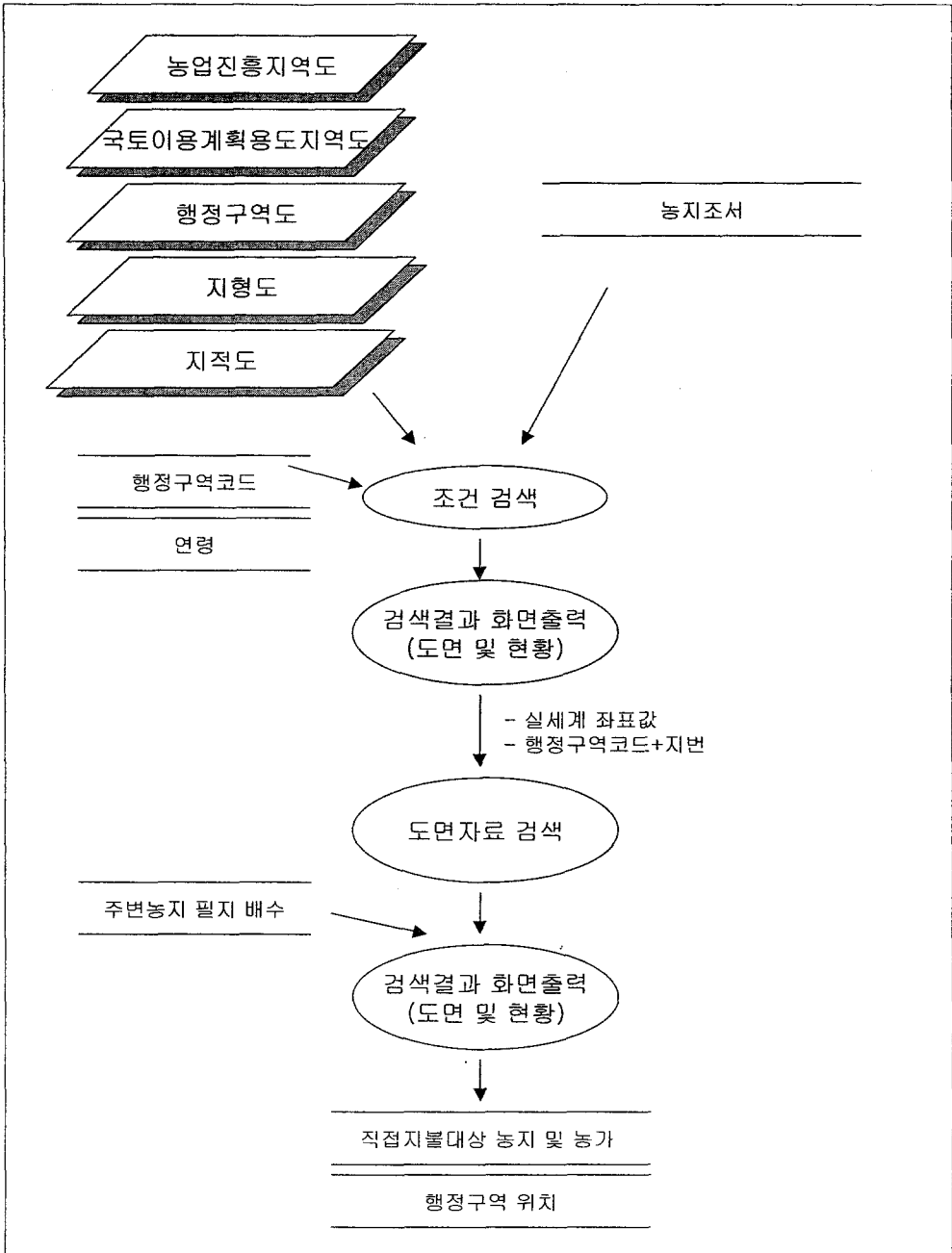
(2) 농지전용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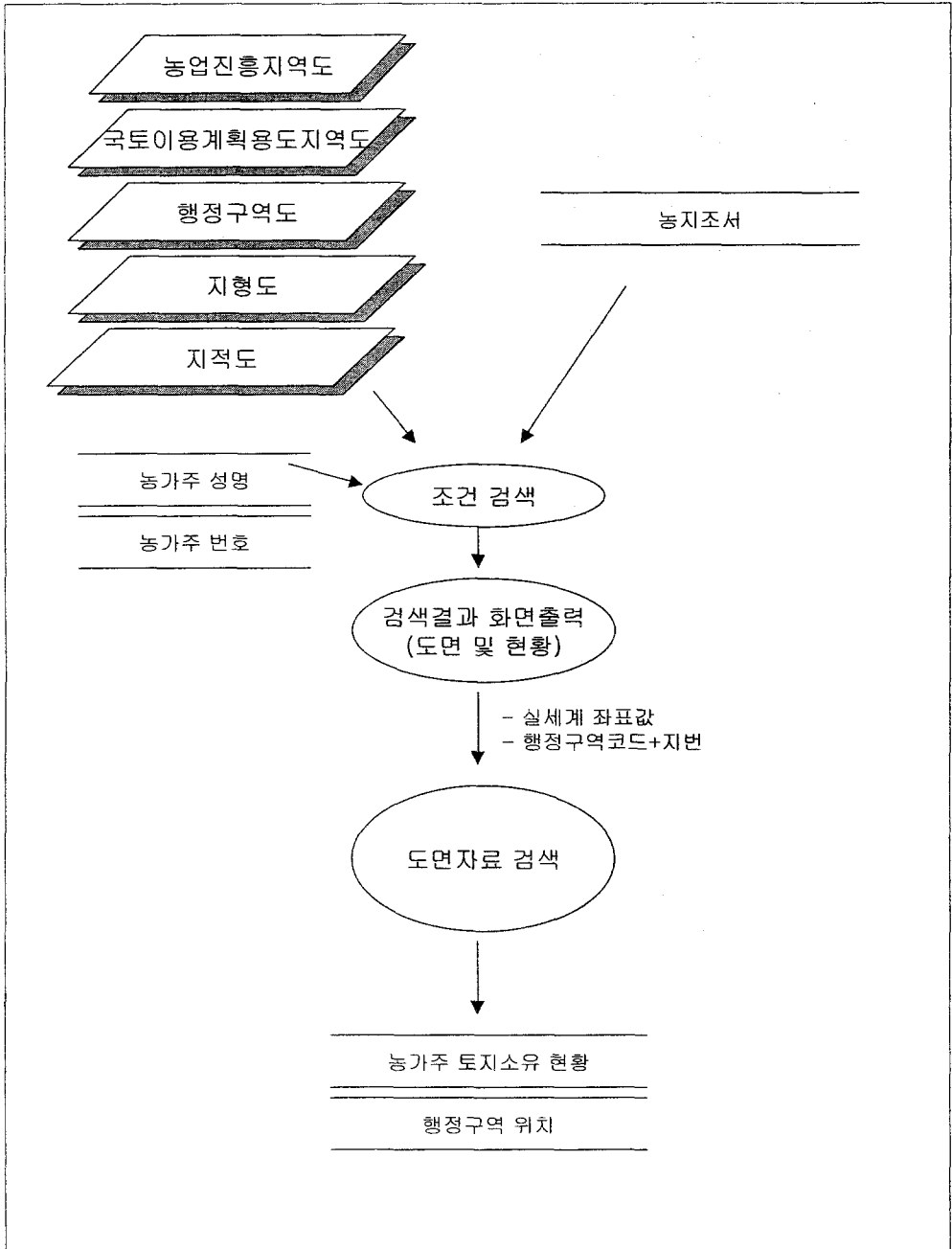
(3) 농지조사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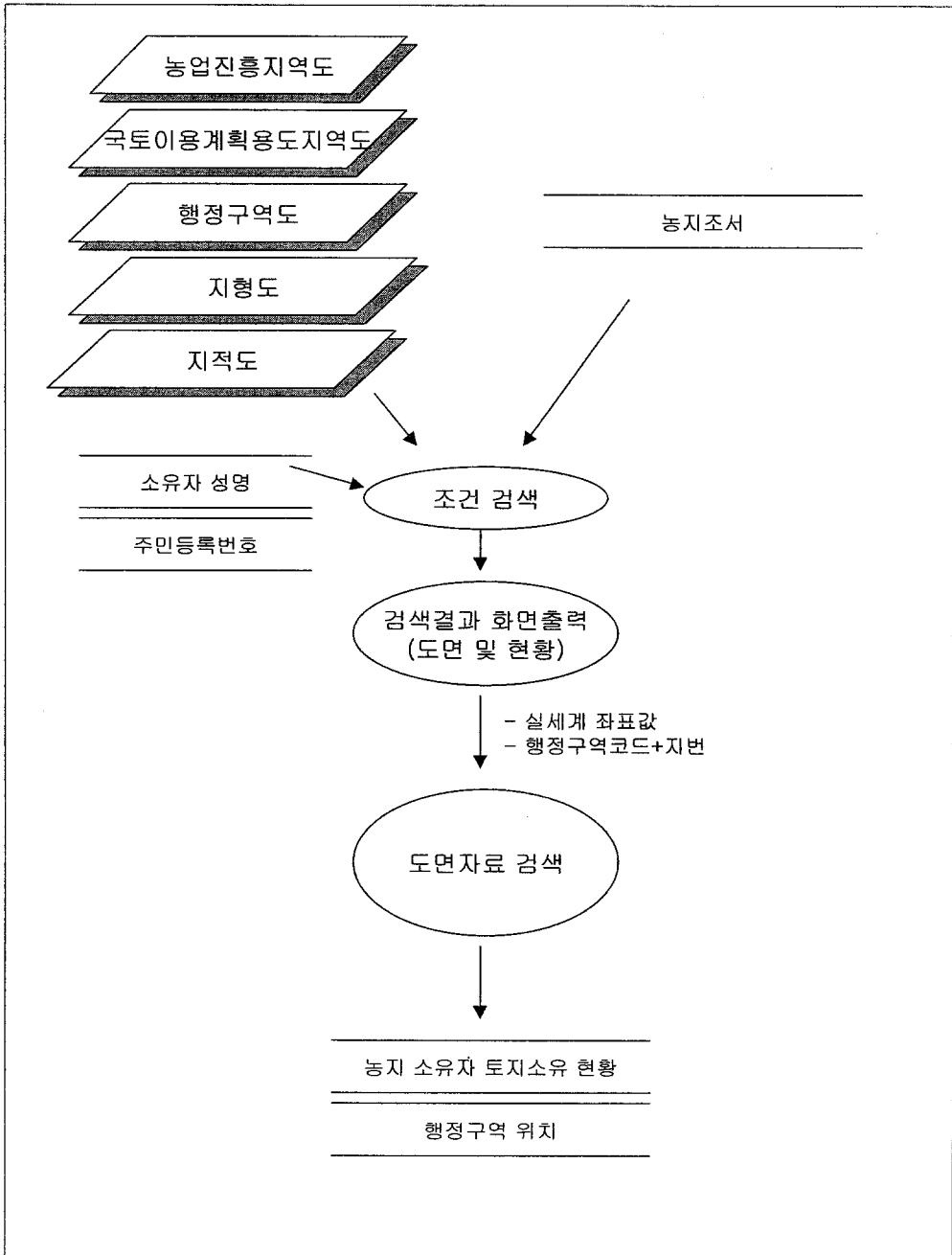
(4) 직접지불제 대상농지 검색



(5) 농가주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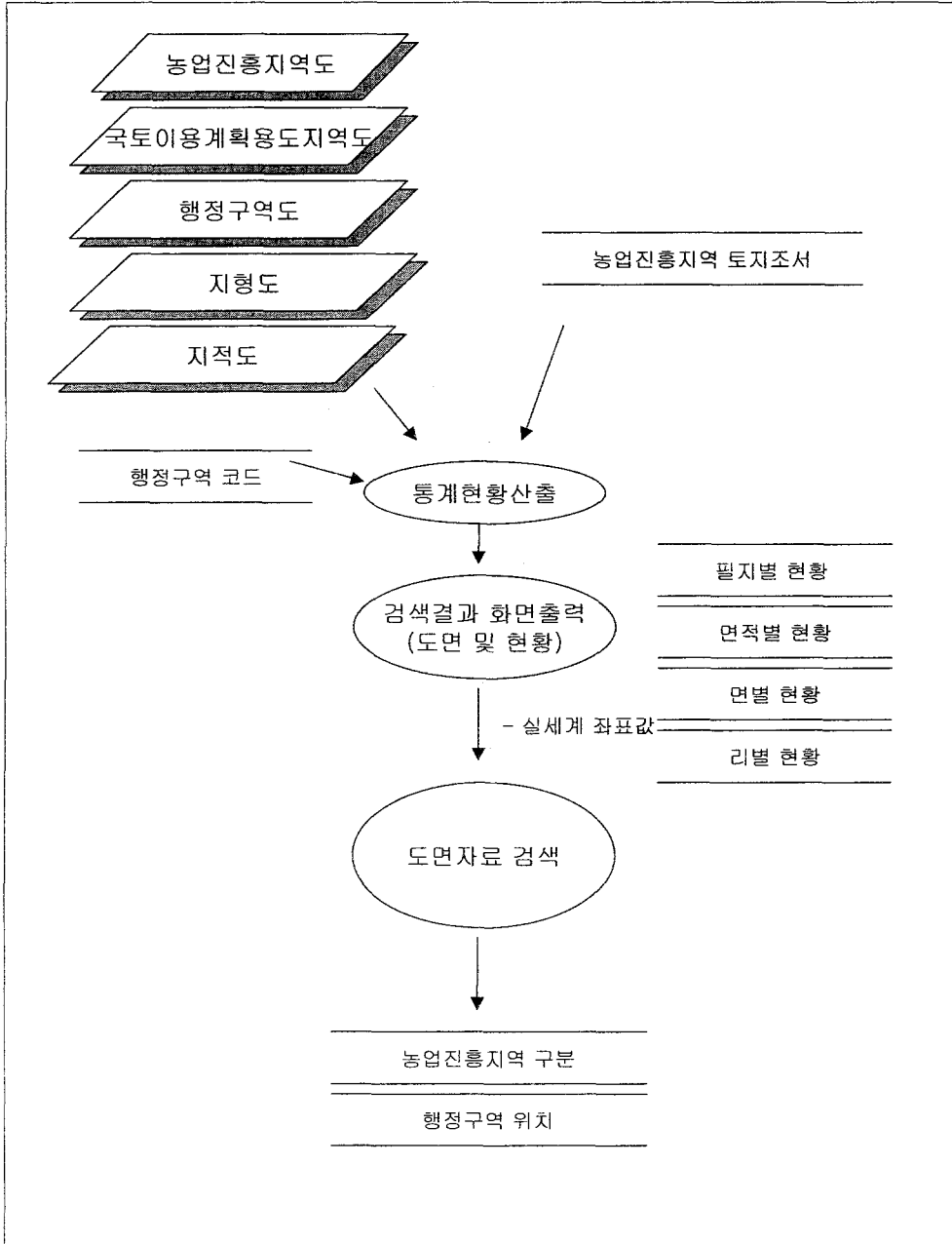


(6) 소유자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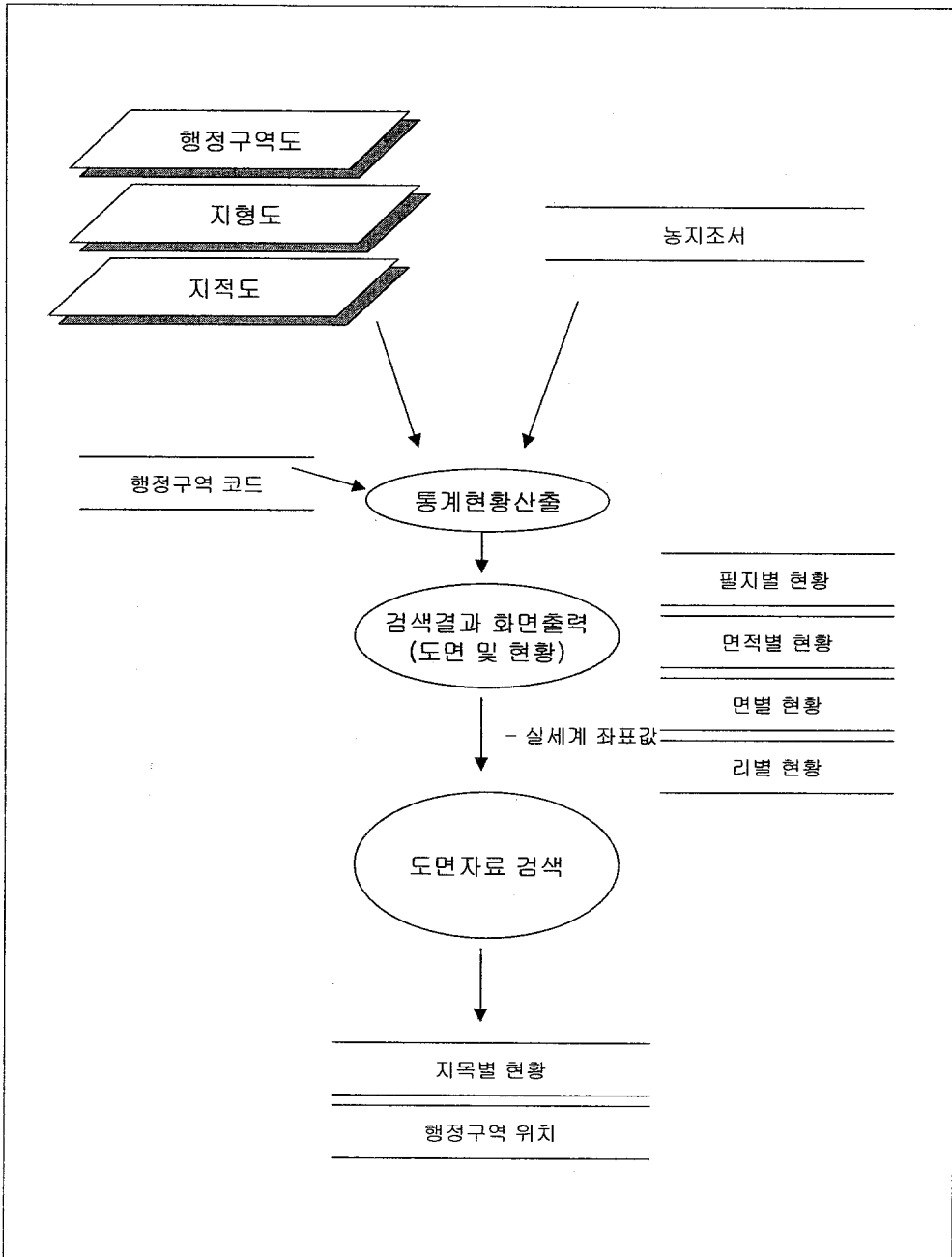


다. 통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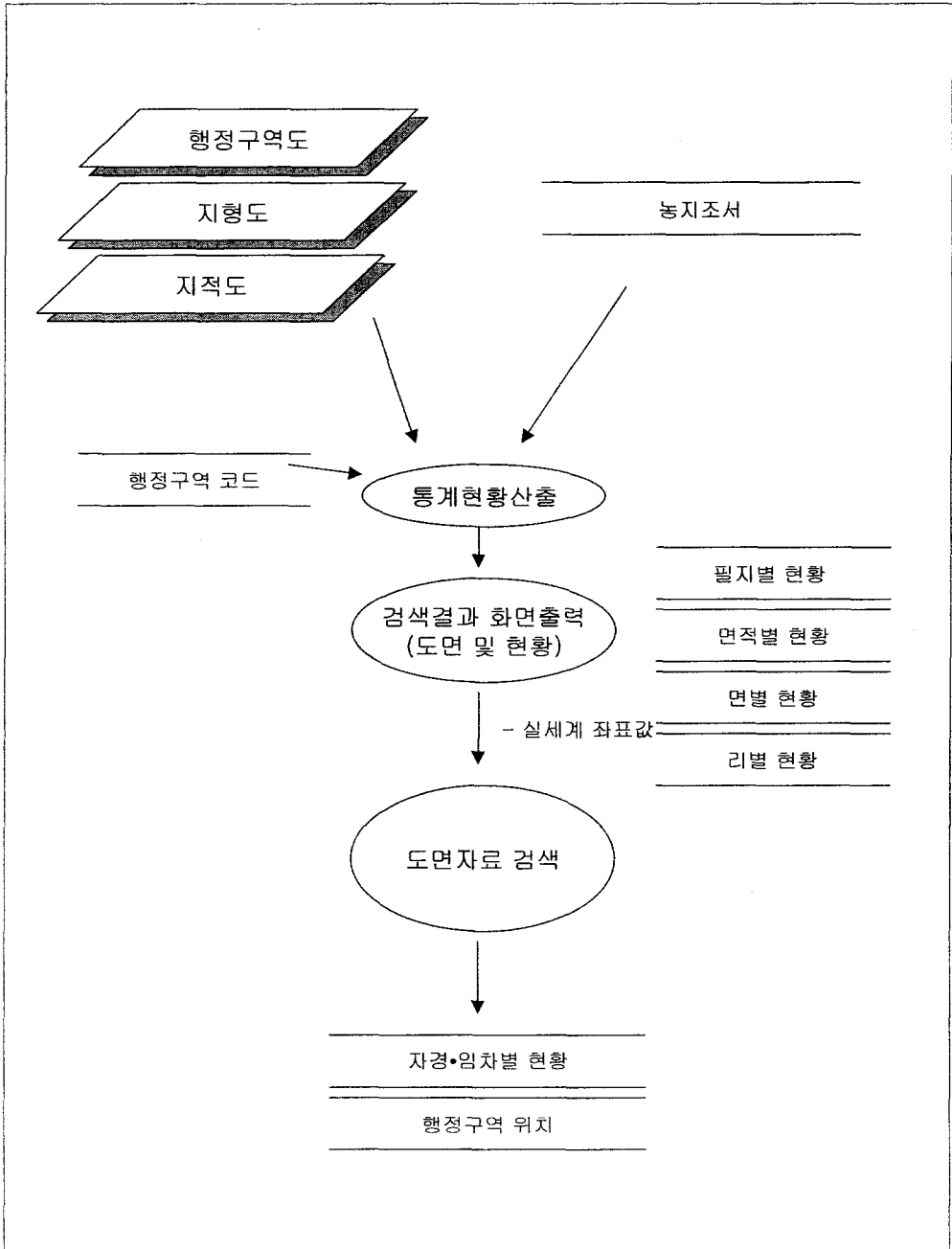
(1) 농업진흥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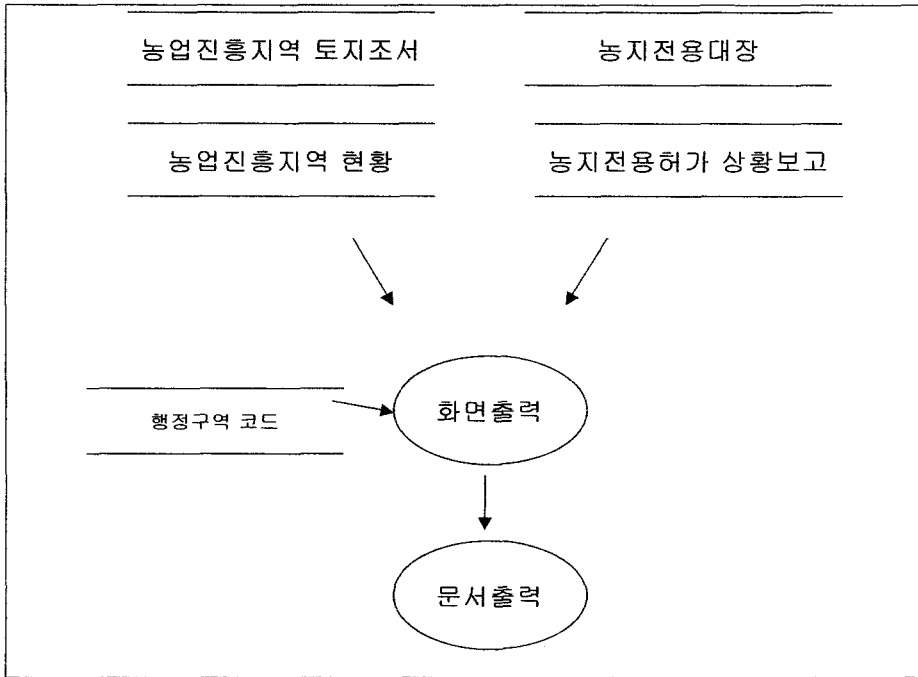
(2) 지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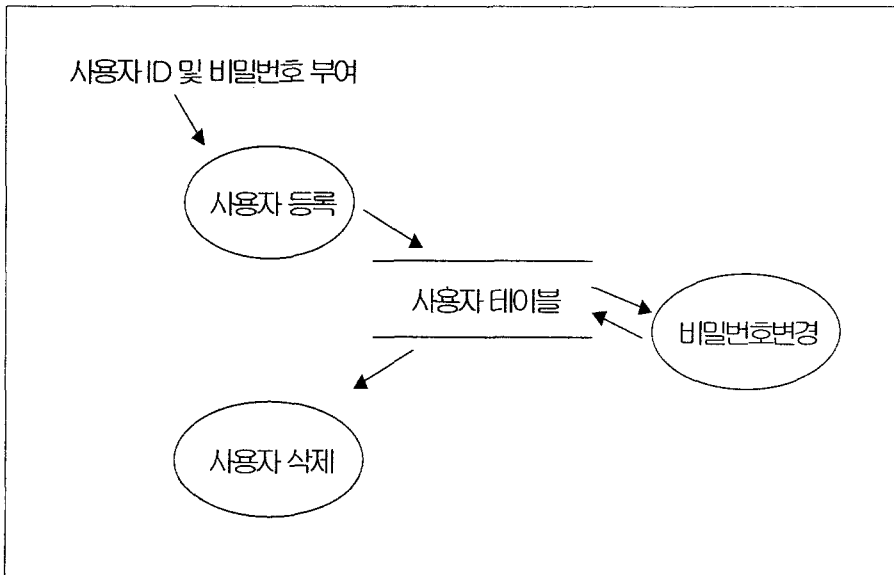
(3) 자경·임차별 현황



라. 자료출력



마. 사용자관리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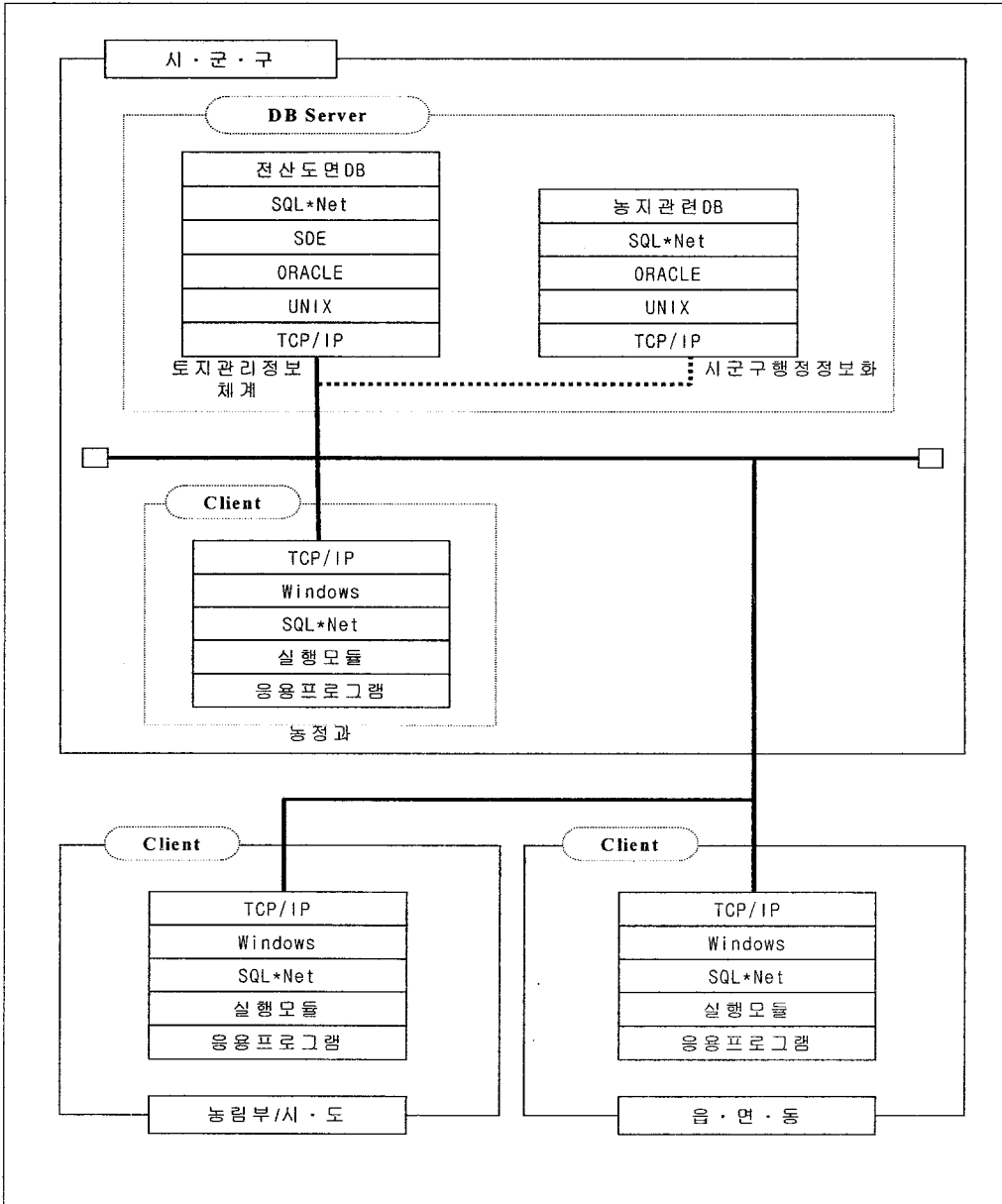
제3장 시스템 설계

1. 시스템 구성도
2. 데이터베이스 설계
3. 코드 설계
4. 입·출력 설계
5. 모듈 설계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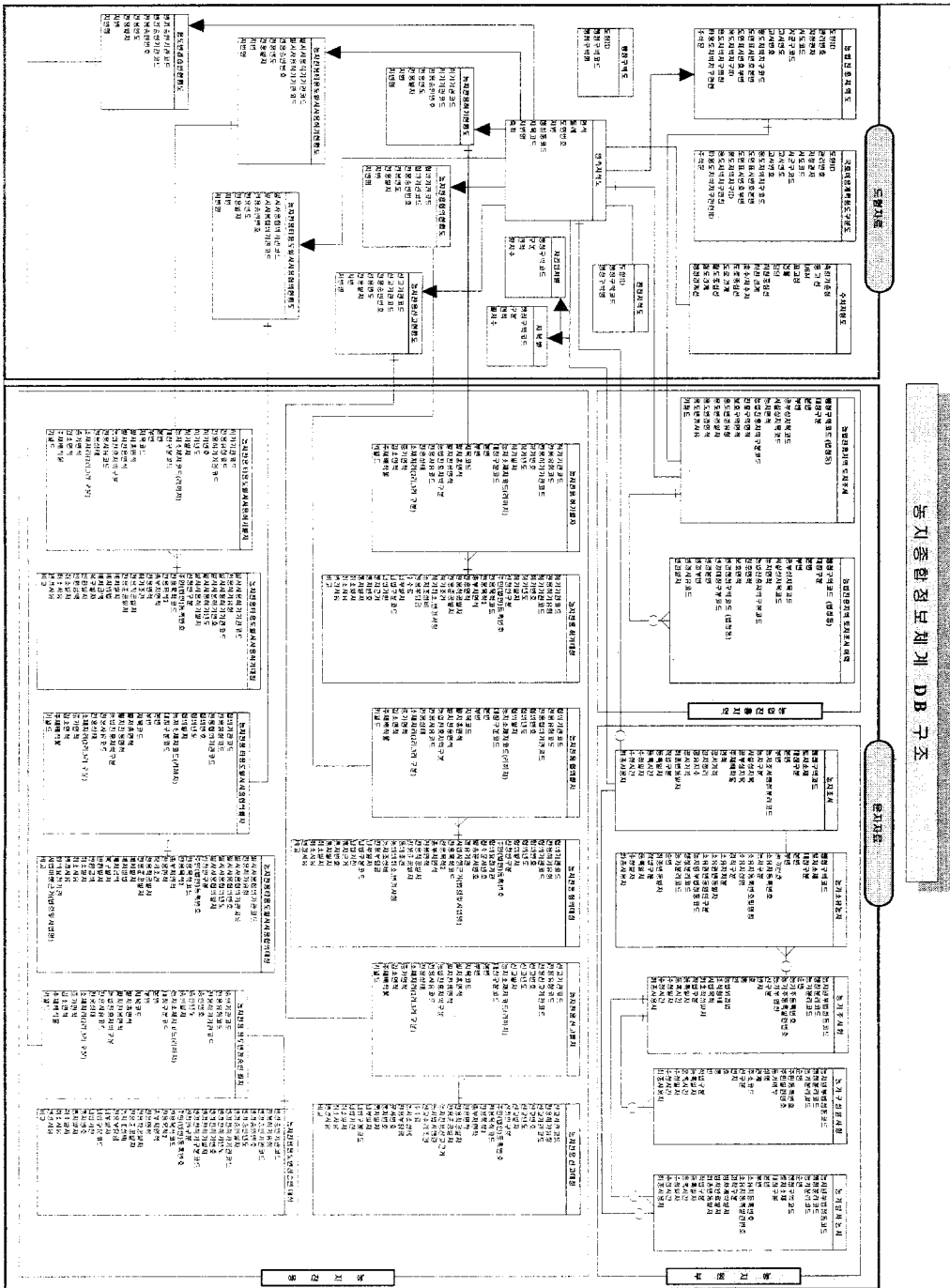
제3장 시스템 설계

1. 시스템 구성도



2. 데이터베이스 설계

가.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나. 도형자료 목록

주 제 도 명	내 용	축 척	비 고
행정구역도(리)	리 경계	1/5,000	
행정구역도(읍면동)	읍·면·동 경계	1/5,000	
인덱스도	shape, Dom, Dname	1/5,000 1/1,000	
연속지적도	면적, 둘레, 도면번호, 행정동코드, 지목코드, 지번명, 축척	1/5,000	
편집지적도	도형ID, 행정구역코드, 구분, 면적, 필지수	1/5,000	
농업진흥지역도	도형ID, 관리번호, 지정권자,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고시연도, 고시번호, 용도지역지구코드, 도면표시번호부번, 용도지역지구명칭, 타용도지역지구관련, 주석문	1/5,000	
농지전용허가현황도	허가기관코드, 전용승인번호, 전용연도, 전용일자, 지번, 지번명	1/5,000	
농지전용협의현황도	협의기관코드, 전용승인번호, 전용연도, 전용일자, 지번, 지번명	1/5,000	
농지전용신고현황도	신고기관코드, 전용승인번호, 전용연도, 전용일자, 지번, 지번명	1/5,000	
농지전용타용도일시 사용허가현황도	일시사용허가기관코드, 전용승인번호, 전용연도, 전용일자, 지번, 지번명	1/5,000	
농지전용타용도일시 사용협의현황도	일시사용협의기관코드, 전용승인번호, 전용연도, 전용일자, 지번, 지번명	1/5,000	
농지전용용도변경승 인현황도	변경승인기관코드, 전용승인번호, 전용연도, 전용일자, 지번, 지번명	1/5,000	
국토이용계획도	도형ID, 관리번호, 지정권자,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고시연도, 고시번호, 용도지역지구코드, 도면표시번호본번, 도면표시번호부번, 용도지역지구ID, 용도지역지구명칭, 타용도지역지구관련ID, 주석문	1/5,000	

3. 코드 설계

가. 코드 설계 기준

- ▣ 기존의 코드를 최대한 수용
- ▣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향후 확장성 고려
- ▣ 코드와 코드이름은 Character Type으로 설계
- ▣ 코드 및 코드이름은 Not Null로 설계
- ▣ 테이블설계시 다른코드로의 수정은 허가

나. 코드테이블내역

테 이 블 명	한글 코드 테이블명	비 고
Addrdo_cd	행정구역상도코드	
Daejang_cd	토지대장구분 코드	
Dongeo_cd	동거여부구분 코드	
Gubun_cd	농업진흥지역 구분 코드	
Jakmul_cd	주재배작물 코드	
Jimok_cd	지목 코드	
Jintype_cd	농업진흥지역 변경종류 코드	
Jinwhy_cd	농업진흥지역 변경사유 코드	
Junorg_cd	전용허가기관 코드	
Junstate_cd	전용상태 코드	
Juntype_cd	전용허가유형 코드	
Junwhy_cd	전용사유 코드	
Kgubun_cd	경작구분 코드	
Kjung_cd	경지정리 유무 코드	
Kwange_cd	가족관계코드	
ManGunbun_cd	신청인구분코드	
NabGunbun_cd	납입구분코드	
Nongachg_cd	농가변경사항코드	
Nongside_cd	농업외겸업 코드	
Own_cd	농지소유방법 코드	
Sundae_cd	선대영농여부 코드	
Ucode_cd	농업진흥지역 코드	

테이블명	Addro_cd
한글테이블명	행정구역상 도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1	서울	
26	부산	
27	대구	
28	인천	
29	광주	
30	대전	
31	울산	
41	경기	
42	강원	
43	충북	
44	충남	
45	전북	
46	전남	
47	경북	
48	경남	
49	제주	

테이블명	Daejang_cd
한글테이블명	토지대장구분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	토지	
2	임야	

테이블명	Dangeo_cd
한글테이블명	동거여부구분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	동거	
2	비동거	
3	사망	

테이블명	Gubun_cd
한글테이블명	농업진흥지역구분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01	진흥구역	
02	보호구역	
03	진흥밖	

제3장 시스템 설계

테이블명	JakmuLcd
한글테이블명	주재배작물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1	벼(일반재배)	
12	보리(일반재배)	
13	두류(일반재배)	
14	잡곡(일반재배)	
15	서류(일반재배)	
16	채소(일반재배)	
17	특용(일반재배)	
18	과수(일반재배)	
19	상전(일반재배)	
21	벼(시설재배)	
22	보리(시설재배)	
23	두류(시설재배)	
24	잡곡(시설재배)	
25	서류(시설재배)	
26	채소(시설재배)	
27	특용(시설재배)	
28	과수(시설재배)	
29	상전(시설재배)	
30	휴경	

테이블명	Jimok_cd
한글테이블명	지목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01	전	
02	답	
03	과수	
04	목장	
05	임야	
06	광천	
07	염전	
08	대지	
09	공장	
10	학교	
11	도로	
12	철도	
13	하천	
14	제방	
15	구거	
16	유지	
17	수도	
18	공원	
19	운동장	
20	유원지	
21	종교	
22	사적지	
23	묘지	
24	잡종지	

제3장 시스템 설계

테이블명	Jintype_cd
한글테이블명	농업진흥지역 변경종류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1	지정(진흥밖 → 진흥구역)	
12	지정(진흥밖 → 보호구역)	
21	변경(진흥구역 → 보호구역)	
22	변경(보호구역 → 진흥구역)	
31	해제(진흥구역 → 진흥밖)	
32	해제(보호구역 → 진흥밖)	

테이블명	Jinwhy_cd
한글테이블명	농업진흥지역 변경사유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1	신규농지조성지역	
12	주민편입희망지역	
13	생산기반정비지역	
14	개발계획변경	
15	정정기타(지정, 변경)	
21	농어업시설	
22	공용·공공용 및 공익시설	
23	주거시설	
24	광·공업댐시설	
25	정정기타(해제)	

테이블명	Junorg_cd	
한글테이블명	전용허가기관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01	시·도	
02	시·군	
03	읍·면	

테이블명	Junstate_cd	
한글테이블명	전용상태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	승인	
2	불허	
3	취소	
4	기타	

제3장 시스템 설계

테이블명	Juntype_cd
한글테이블명	전용허가유형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01	농지전용허가	
02	농지전용협의	
03	농지전용신고	
04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허가	
05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협의	
06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테이블명	Junwhy_cd
한글테이블명	전용사유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01	공공(국방·군사시설)	
02	공공(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	
03	공공(기타시설)	
04	민간(공공시설)	
05	민간(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06	민간(주거시설)	
07	민간(관광시설)	
08	민간(농업용시설)	
09	민간(어업용시설)	
10	민간(기타시설)	
11	신고(농업인주택)	
12	신고(농업용시설)	
13	신고(어업용시설)	
14	신고(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15	신고(농어촌산업지구시설)	
16	신고(기타시설)	
17	일시사용전용허가(하천관리시설)	
18	일시사용전용허가(산림복구)	
19	일시사용전용허가(기타)	

테이블명	Kgubun_cd
한글테이블명	경작구분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	자경	
2	임대	
3	임차	
4	위탁(전면)	
5	조합법인	
6	농진공임대	
7	사용대	
8	사용차	
9	휴경	

테이블명	Kjung_cd
한글테이블명	경지정리유무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	유	
2	무	

테이블명	Kwange_cd
한글테이블명	가족관계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01	본인	
02	처	
03	부(남편)	
04	부(아버지)	
05	모	
06	조부	
07	조모	
08	장인	
09	장모	
10	증조부	
11	증조모	
12	자	
13	손	
14	자부	
15	손부	
16	미혼형제	
17	증손	
18	기타	

테이블명	Mangubun_cd
한글테이블명	신청인구분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	개인	
2	법인	
3	기타	

테이블명	Nabgubun_cd
한글테이블명	납입구분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	통지납입	
1	자진납부	

테이블명	Nongachg_cd
한글테이블명	농가변경사항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1	농가등록	
21	농가내용변경	
31	농가말소	
41	농가전입	
42	농가번호변경	

테이블명	Nongside_cd
한글테이블명	농업외검업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1	서비스업	
2	어업	
3	상업	
4	광공업 및 제조업	
5	가내수공업	
6	공무원	
7	회사원	
8	기타	

제3장 시스템 설계

테이블명	Own_cd
한글테이블명	농지소유방법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01	보존(신규)	
02	이전(매매)	
03	상속·증여등	

테이블명	Sundae_cd
한글테이블명	선대영농여부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01	유	
02	무	

테이블명	Ucode_cd
한글테이블명	농업진흥지역 코드

코 드	코 드 명	비 고
uea001	농업진흥구역	
uea002	농업보호구역	

4. 입·출력 설계

가. 입력설계

□ 농업진흥지역 지정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제3장 시스템 설계

□ 농업진흥지역 수정

□ 농지전용허가대상 입력

□ 농지전용협의대상 입력

농지전용협의대상 입력

권출입신청	협의기관	협의일자	2000년 11월 23일	협의번호
신청자(허가발급자)	신청인구분	협의요청기관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사항	
주소(주소번호)	필출(주소번호)	영유권자	지번지정번호	
전용목적	전용목적 상세	준공일자		
총부지면적	㎡	확공일자	준공일자	
동의조건				
동의취소연결사항				
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	원	전용부담금	원
납부사항	납입구분코드	납입기한	납부일자	
	농지번호	농지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변경사유		
비고				

허가종재판서

읍·면·동	리	구분	분면	부면	지목	면적(㎡)	용도구분	전용면적	농지구분	종기면적	권소면적	주재배

레코드 추가 레코드 삭제

추 가 취 소 저 장 알 기

□ 농지전용신고대상 입력

농지전용신고대상 입력

권출입신청	신고기관	신고일자	2000년 11월 23일	신고번호
신청자(허가발급자)	신청인구분	수수료	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사항	
전용목적	전용목적 상세	준공일자		
총부지면적	㎡	확공일자	준공일자	
금지전용신고금액	농지법 시행령			
신고수리조건				
농지조성비	농지조성비	원	전용부담금	원
납부사항	납입구분코드	납입기한	납부일자	
	농지번호(주소번호)	농지번호	농지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변경사유		
비고				

허가종재판서

읍·면·동	리	구분	분면	부면	지목	면적(㎡)	용도구분	전용면적	농지구분	종기면적	권소면적	주재배

레코드 추가 레코드 삭제

추 가 취 소 저 장 알 기

□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입력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입력

전용일련사항	허가기관	허가일자	2000년 11월 23일	허가번호
신청지(허가발출지)	신청인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사항		
일시사용목적	일시사용목적상세			
출부지연적	사용시작일자	사용종료일자		
허가조건				
납부사항	배치일자	배치방법	배치금액	원
	복구일자	인양일자	인양금액	원
취소일자	취소사유	변경사유		
비고				

허가농지명세

읍·면·동	리	구분	분면	부면	지목	연적(m ²)	종도구분	전용연적	용/리구분	용가면적	감소면적	주재배

레코드 추가 레코드 삭제

추 가 취 소 제 장 닫 기

□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입력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입력

협의일련번호	협의기관	협의일자	2000년 11월 23일	협의번호
신청지(허가발출지)	신청인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사항		
일시사용목적	일시사용목적상세			
출부지연적	사용시작일자	사용종료일자		
허가조건				
전용예결시기	배치일자	배치방법	배치금액	원
	복구일자	인양일자	인양금액	원
취소일자	취소사유	변경사유		
비고				

허가농지명세

읍·면·동	리	구분	분면	부면	지목	연적(m ²)	종도구분	전용연적	용/리구분	용가면적	감소면적	주재배

레코드 추가 레코드 삭제

추 가 취 소 제 장 닫 기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상 입력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상 입력

전용일부사항	전용종류	용도변경승인	변경승인가권	
변경승인일자	변경승인일자	2000년 11월 29일	변경승인번호	
변경전 전용사항	변경전 전용종류		변경전 허가기관	
변경전 허가일자	변경전 허가일자	2000년 11월 29일	변경전 허가번호	
신청자(승인발급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기타사항
전용목적			전용목적 상세	
승부지연적		학공일자	공공일자	
금지조성비	금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납부사항	납입구분코드	납입기한	납부일자	
	통지번호		통지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변경사유	
비고				

용도변경승인용지명세

읍	면	동	리	구분	분면	부면	지목	연적(㎡)	용도구분	전용연적	용/리 구분	용거면적	감소면적	주재배

레코드 추가 레코드 삭제

추가 취소 저장 닫기

□ 농지전용허가대상 수정

농지전용허가대상 수정

19 / 19

전용일부사항	허가기관	시·도	허가일자	2000년 10월 31일	허가번호	13
신청인구분	신청인구분		수수료	0		
신청자(허가발급자)	주민등록번호	730602	2017212	성명	김현정	
	주소	411791020	경기 안양동안구 관왕동	115	한가람신라아파트 409-1101	
	전화번호	0949-386-087		기타사항	테스트	
전용목적			전용목적 상세			
승부지연적	10000		학공일자	2000년 10월 31일	공공일자	2000년 10월 31일
허가조건						
허가변경사항						
금지조성비	금지조성비	0	전	전용부담금	0	원
납부사항	납입구분코드	지진납부	납입기한	2000년 10월 31일	납부일자	2000년 10월 31일
	통지번호(취소번호)		통지번호		통지일자	2000년 10월 31일
취소일자	2000년 10월 31일	취소사유		변경사유	테스트라니까...	
비고	this is test					

허가용지명세

읍	면	동	리	구분	분면	부면	지목	연적(㎡)	용도구분	전용연적	용/리 구분	용거면적	감소면적	주재배
덕산면	응동리	토지	14	0	전	0	0	0	0	0		0	0	
덕산면	응동리	토지	14	0	전	0	0	0	0	0		0	0	

레코드 추가 레코드 삭제

처음 << 이전 < > 다음 >> 마지막 검색 삭제 저장 닫기

제3장 시스템 설계

나. 출력설계

농지전용허가 (협약·신고) 대 장						
허가번호 및 일자	제 호 (년 월 일)				수 수 료	
신 청 자 (허가 받을 자)	성 명 (명 칭)		주민등 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농 지 소 재 지	충청북도 진천군 읍 리 번지 외 필지					
전 용 목 적					총부지면적	m ²
구 분	전 용 허 가 면 적 (m ²)					
	계	답	전	기	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합 계						
전용 예정 시기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 일자	년 월 일		
허 가 조 건						
허 가 의 취 소 변 경 사 항						
농 지 조 성 비· 전 용 부 담 금 납 부 상 황	부 과 명 세 서 통 지 상 황	농지조성비 : 원			전용부담금 : 원	
	납 부 근 거	통 지 근 거 : 문서번호 (년 월 일) 납부년월일 (년 월 일)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수납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비 고						

농지 전용 허가 대장

[2000년도]

[경상남도 김해시]

허가 번호	신청인		전용농지의 표시				전용허가면적			허가 일자	전용목적	대체농지 조성비 (전용부담금)	농지 구분
	주소	성명	읍면·리	지번	지목	지적	전	답	계				

농지 전용 협의 대장

[2000년도]

[강원도 홍천군]

협의 번호	신청인		전용농지의 표시				전용허가면 적			협의 일자	전용목적	대체농지 조성비(전 용부담금)	농지 구분
	주소	성명	읍면·리	지번	지 목	지적	전	답	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대장

〔 2000년도 〕

〔 경상남도 김해시 〕

허가 증 발 급 일 자	신 청 인			일시사용허가면적 (㎡)					사용목적	허가 기간	복구비용		복 구 일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농지 소재 지	진흥 지역 구분	계	답	전			예치 일자 및 금액	반환일자 및 금액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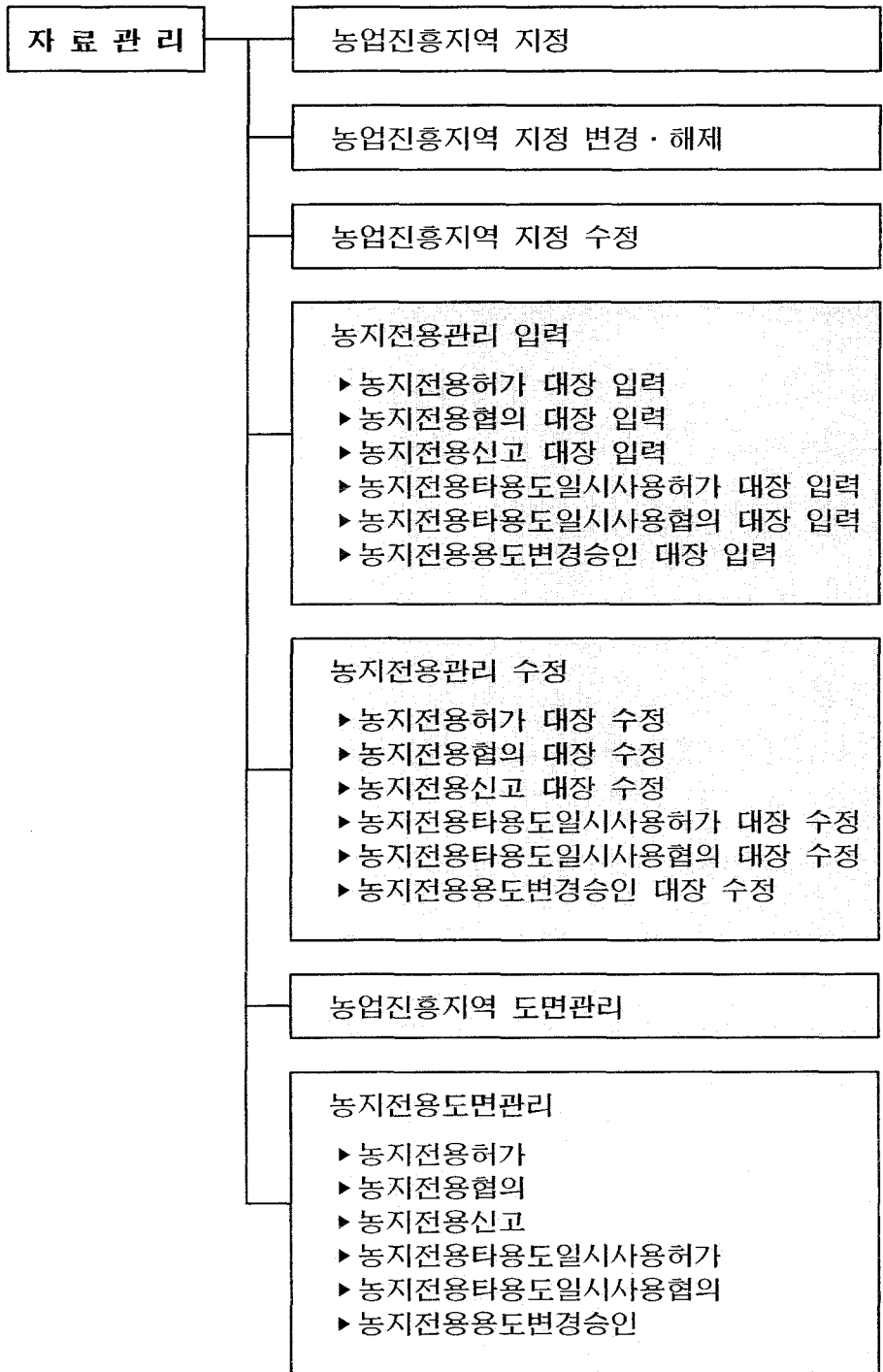
〔 2000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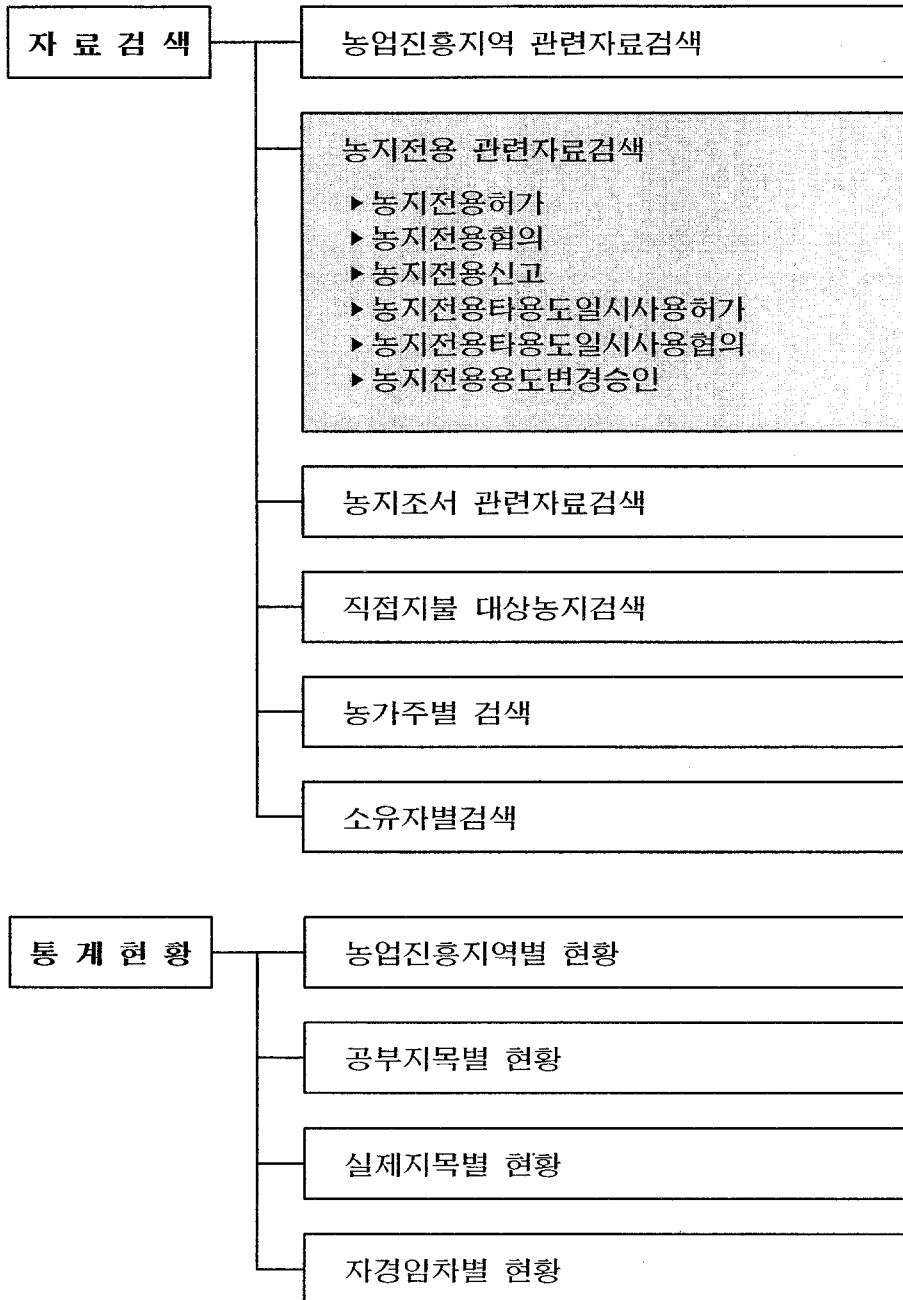
〔 강원도 홍천군 〕

승 인 번 호	일 자	신 청 인			용 도 변 경 내 역 (㎡)						사 유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토지소재지	용도 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용도 면적	전용 면적	용도 면적	전용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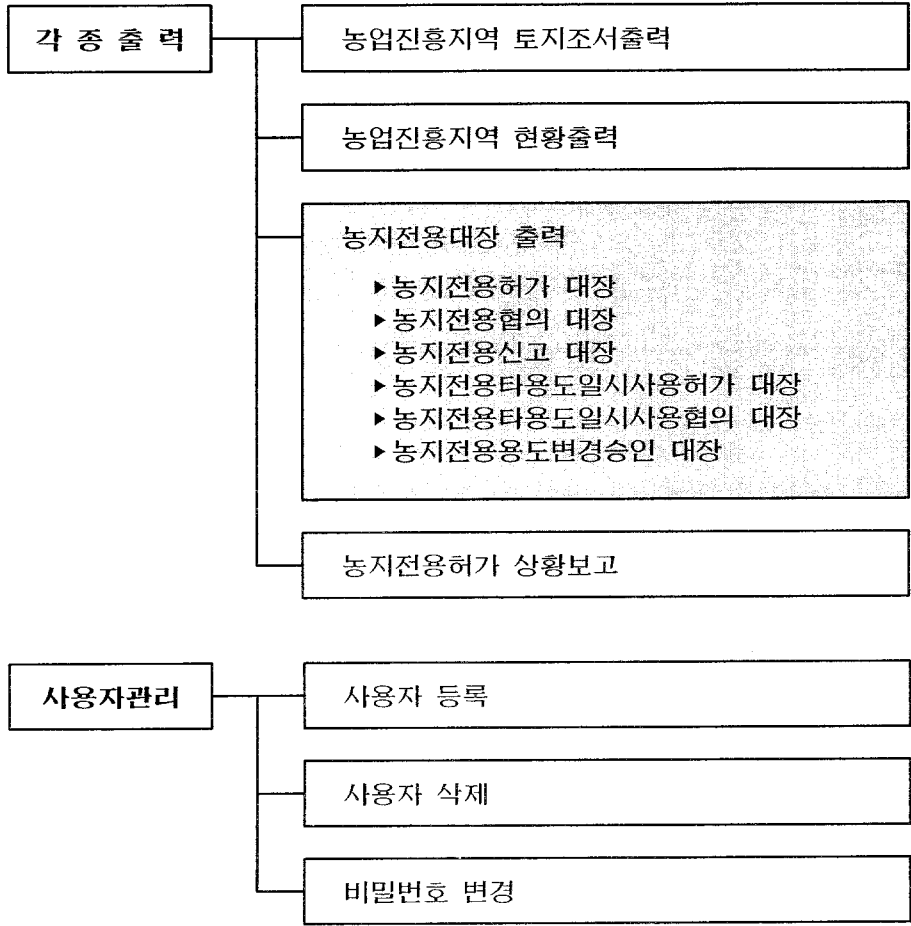
허 가 농 지 명 세					
리	지번	지목	면적 (㎡)	진 용 지 역 용 도 구 분	전 용 면 적 (㎡)

5. 모듈 설계





제3장 시스템 설계



'2000 보완개발 (Stand Alone → Client/Server방식)

'2000 신규추가개발

제4장 개발환경 및 구현

1. 시스템 개발환경
2. 프로그램 목록
3. 시스템 구현

여 백

제4장 개발환경 및 구현

1. 시스템 개발환경

(가) 운영환경

- 기종 : Pentium PC급 이상
- OS : Windows 95 이상, Windows NT
- 메모리 : 32MB 이상
- 하드 용량 : 100MB이상

(나) 개발환경

- DB 구축환경
 - 서버 : J50 (IBM)
 - OS : Unix
 - GIS 사용 툴 : ARC/INFO 8.0.1
-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 기종 : Pentium PC
 - OS : Windows NT
 - 개발언어 : Visual Basic 6.0
 - GIS S/W : MapObjects 1.2
 - DBMS : MS-Access 7.0

(다) 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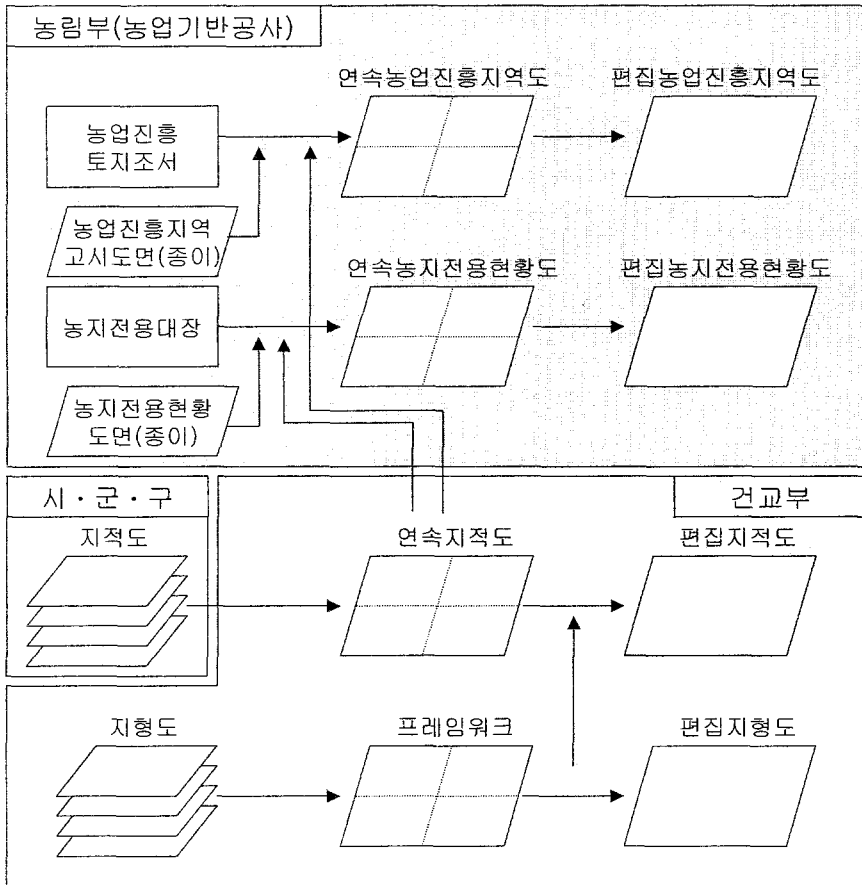
- 대상지역 : 강원 홍천군, 경남 김해시
- 도면자료
 - 주제도명 : 농업진흥지역도, 농지전용현황도
 - 지적도와 대사하여 보완 입력
- 문자자료
 - 농업진흥지역토지조서
 - 농지원부 DB (농가주, 세대원, 농지조서, 소유농지, 임차농지)
 - 농지전용 대장 (허가, 협의, 신고,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타용도일시사용협

제4장 개발환경 및 구현

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 농지전용 필지 (허가, 협의 신고,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타용도일시사용협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DB구축체계〉



2. 프로그램목록

□ Form

주메뉴	Form 명	기능설명
공통	FormStartup	Login
	FrmMain	주화면
	Frm대상지역선택	대상지역
자료관리	frm1	자료관리
	frm11	농업진흥지역지정
	frm12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
	frm13	농업진흥지역수정
	농지전용대장입력	frmJunIns_sel
	frmInjeok	주소선택
	frm151	농지전용허가대장입력
	frm152	농지전용협의대장입력
	frm153	농지전용신고대장입력
	frm154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입력
	frm155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입력
	frm156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입력
	frmJunUpt_Sel	농지전용대장수정
	frm16find	농지전용검색조건
	frm161	농지전용허가대장수정
	frm162	농지전용협의대장수정
	frm163	농지전용신고대장수정
	frm164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수정
frm165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수정	
frm166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수정	

제4장 개발환경 및 구현

주메뉴	Form 명	기능설명
	FormJin_select	농업진흥지역도관리지역센터
	FormJinMapEdit	농업진흥지역도관리
	FormJin_insert	농업진흥지역도속성입력
	FormJun_select	농지전용현황도관리지역 및 레이어선택
	FormJunIns_Sel	농지전용현황도관리
자료검색	frm2	자료검색
	frm21	농업진흥지역검색조건
	frm21out	농업진흥지역검색결과
	form22	농지조서검색조건
	form22out	농지조서검색결과
	form23	농가주별검색조건
	form23out	농가주별검색결과
	form25	직접지불대상농지검색조건
	form25out	직접지불대상농지검색결과
	frmJunSearch_Sel	농지전용검색
	Form27	농지전용검색조건
	form27out	농지전용검색결과
	form28out	소유자별검색조건
	form28out	소유자별검색결과
통계현황	frm3	통계현황
	frm30	통계현황조건
	frm31	농업진흥지역통계현황결과
	form31	공부지목별, 실제 지목별, 자경·임차 별 통계현황
각종출력	frm4	각종출력
	frm농업진흥지역 토지조서출력	농업진흥지역토지조서출력
	frm농업진흥지역 현황출력	농업진흥지역현황출력

주메뉴	Form 명	기능설명
	frm농지전용출력선택	농지전용대장출력선택
	frmFind	농지전용대장출력조건검색결과
	frm농지전용허가상황 보고출력	농지전용허가상황보고출력조건
사용자관리	frmUser	사용자관리
	frmUserChg	비밀번호변경
	frmUserDel	사용자삭제
	frmUserReg	사용자등록

□ Module

Module 명	기능설명
modCode	코드 유효값 검사 및 코드변환
modDataCheck	DATA 유효성 체크
modMain	시작 프로그램으로써 전역변수 설정
modUtilities	시스템명 설정, 비밀번호 암호화, DB link, 지번범위 구하기, form 위치, 콤보초기화, 주민번호 유효성 체크 등
modYMD	입력된 날짜 유효성 체크

□ ClassModule

Class 명	기능설명
clsAdmin	행정구역코드관리
clsDrawSymbol	심볼 그리기
clsMap3Disp	도면창 그리기
clsMapTip	도면창에서 각종 팁 제공

3. 시스템 구현내용

시스템	농지종합정보시스템
부시스템	공통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ID	기능설명
Login	frmStartup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시스템을 시작한다.
주화면	frmMain	주화면은 대상지역선택, 자료관리, 자료검색, 통계현황, 각종출력, 사용자관리, 끝내기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지역	frm대상지역선택	작업대상지역을 지정한다.

시스템	농지종합정보시스템
부시스템	자료관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ID	기능설명
자료관리	frm1	농업진흥지역관리, 농지전용관리, 도면관리의 가지로 나뉘며 입력하고자 하는 사항을 선택한다.
농업진흥지역지정	frm11	농업진흥지역이 새로 추가지정 되었을 때 토지조서의 내역을 입력한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frm12	농업진흥지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된 경우 내역을 입력한다.
농업진흥지역수정	frm13	농업진흥지역지정 및 변경·해제의 사항 입력이 틀렸을 경우 수정을 한다.
농지전용대장입력	frmJunIns_sel	농지전용대장을 입력하기 위해 6가지 전용 유형중에 작업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한다.
주소선택	frmInjeok	자료입력시 주소입력란에 읍·면·동 또는 리이름을 입력한 뒤 탭 키를 누를 경우 관련된 행정구역코드와 행정구역명의 리스트를 검색하여 준다.
농지전용허가대장 입력	frm151	농지전용허가대장을 입력한다.
농지전용협의대장 입력	frm152	농지전용협의대장을 입력한다.
농지전용신고대장 입력	frm153	농지전용신고대장을 입력한다.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허가대장 입력	frm154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을 입력한다.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협의대장 입력	frm155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을 입력한다.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대장입력	frm156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을 입력한다.

제4장 개발환경 및 구현

프로그램 ID	Form 이름	기능설명
농지전용대장수정	frmJunUpt_Sel	농지전용대장을 수정하기 위해 6가지 전용 유형중에 작업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한다.
농지전용검색조건	frm16find	농지전용대장의 내용의 수정을 위해 기 입력된 대장을 조건 검색한다. 허가조건(허가기관, 허가일자, 허가번호, 주민번호), 신청자 이름을 검색 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대장 수정	frm161	농지전용허가대장의 입력된 내용이 틀렸을 경우 수정한다.
농지전용협의대장 수정	frm162	농지전용협의대장의 입력된 내용이 틀렸을 경우 수정한다.
농지전용신고대장 수정	frm163	농지전용신고대장의 입력된 내용이 틀렸을 경우 수정한다.
농지전용타용도일 시사용허가대장 수정	frm164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의 입력된 내용이 틀렸을 경우 수정한다.
농지전용타용도일 시사용협의대장 수정	frm165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의 입력된 내용이 틀렸을 경우 수정한다.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대장수정	frm166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의 입력된 내용이 틀렸을 경우 수정한다.
농업진흥지역도 관리지역선택	FormJin_select	농업진흥지역도 편집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소재지를 선택한다.
농업진흥지역도 관리	FormJinMapEdit	농업진흥지역도를 관리하는 화면으로 해당 지번을 검색하여 선택한 후 도면을 편집을 한다.
농업진흥지역도 속성입력	FormJin_insert	농업진흥지역도의 도면속성을 입력한다.
농지전용현황도 관리지역및레이어 선택	FormJun_select	농지전용현황도 편집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소재지 및 현황도를 선택한다.
농지전용현황도 관리	frmJunIns_Sel	농지전용현황도를 관리하는 화면으로 해당 지번을 검색하여 선택한 후 도면을 편집을 한다.

시스템	농지종합정보시스템	
부시스템	자료검색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ID	기능설명
자료검색	frm2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농지조서, 직접지불 대상농지, 농가주별, 소유자별검색으로 나뉘며 검색하고자 하는 사항을 선택한다.
농업진흥지역검색 조건	frm21	농업진흥지역검색을 위한 조건을 입력한다. 토지소재지, 지목등 일반사항, 면적, 진흥 지역변경내역등으로 검색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검색 결과	frm21out	농업진흥지역검색결과를 도면으로부터 직접 검색하거나, 속성자료로부터 도면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면의 확대, 축소, 이동등이 가능하다.
농지조서검색조건	form22	농지조서검색을 위한 조건을 입력한다.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공유자수, 지목, 주재 배작물, 경지정리유무등으로 검색 가능하다.
농지조서검색결과	form22out	농지조서검색결과를 도면으로부터 직접 검색하거나, 속성자료로부터 도면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가주별검색조건	form23	농가주별검색을 위한 조건을 입력한다. 농가주 성명과 주민번호로 검색가능하다.
농가주별검색결과	form23out	농가주검색결과 농가주성명, 가족사항, 농지사항이 검색되며 검색된 농지로부터 도면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지불대상농지 검색조건	form25	직접지불대상농지검색을 위한 조건을 입력한다. 토지소재지 및 연령을 입력한다.
직접지불대상농지 검색결과	form25out	직접지불대상농지검색결과 고령농의 농지가 검색되며 필지배수 정보검색을 통해 선택한 고령농의 농지 주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를 검색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환경 및 구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ID	기능설명
농지전용검색	frmJunSearch_Sel	농지전용내역을 검색하기 위해 6가지 전용 유형중에 검색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한다.
농지전용검색조건	form27	농지전용검색을 위한 조건을 입력한다. 토지소재지,지번,전용일자,전용사유,전용면적,전용기관등으로 검색가능하다.
농지전용검색결과	form27out	농지전용검색결과를 읍·면·동 단위로 필지별 합계를 산출해 주며, 검색된 필지의 도면상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
소유자별검색조건	form28out	소유자별검색을 위한 조건을 입력한다. 소유자 성명과 주민번호로 검색가능하다.
소유자별검색결과	form28out	소유자별검색결과 소유자가 소유한 농지사항이 검색된 농지로부터 도면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템	농지종합정보시스템	
부시스템	통계현황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ID	기능설명
통계현황	frm3	농업진흥지역, 공부지목, 실제지목, 자경·임차별통계현황을 볼 수 있으며 이 중 원하는 사항을 선택한다.
통계현황조건	frm30	산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를 선택한다.
농업진흥지역통계 현황결과	frm31	농업진흥지역통계현황을 제공한다. 필지별, 면적별 그래프 및 행정구역별(면전체, 리별)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의 필지수와 면적이 산출되며 도면상에는 지적도를 기반으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색상으로 표시된다.
공부지목별, 실제 지목별, 자경·임 차별통계현황	form31	선택한 통계현황을 제공한다. 필지별, 면적별 그래프 및 행정구역별(면전체, 리별) 내역이 면적으로 산출된다.

제4장 개발환경 및 구현

시스템	농지종합정보시스템
부시스템	각종출력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ID	기능설명
각종출력	frm4	농업진흥지역토지조서, 농업진흥지역현황, 농지전용대장, 농지전용허가상황보고출력 중 원하는 사항을 선택한다.
농업진흥지역 토지조서출력	frm농업진흥지역 토지조서출력	농업진흥지역토지조서 출력을 위한 토지소재지를 선택하고, 프린터, 화면으로 출력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 현황출력	frm농업진흥지역 현황출력	농업진흥지역현황 출력을 한다. 프린터 또는 화면으로 출력 가능하다.
농지전용대장 출력선택	frm농지전용출력 선택	농지전용대장을 출력하기 위해 6가지 전용 유형중에 검색하고자 하는 유형을 선택한다. 출력하고자 하는 대장을 검색한다.
농지전용대장 출력조건검색	frm농지전용출력	허가조건(허가기관, 허가일자, 허가번호) 및 신청자 이름으로 검색가능하다.
농지전용대장 출력조건검색결과	frmFind	검색된 대장의 내역을 디스플레이한다. 출력하고자하는 대장을 선택한 후 프린터 및 화면으로 출력가능하다.
농지전용허가상황 보고출력조건	frm농지전용허가 상황보고출력	농지전용허가상황보고 출력을 한다. 출력하고자하는 전용의 기간을 선택하고 프린터 또는 화면으로 출력가능하다.

시스템	농지종합정보시스템
부시스템	사용자관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ID	기능설명
사용자관리	frmUser	사용자등록, 사용자삭제, 비밀번호 변경의 사용자 관리중 원하는 사항을 선택한다.
비밀번호변경	frmUserChg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사용자삭제	frmUserDel	사용자를 삭제한다. 사용자삭제는 관리자 (Admin)으로 Login하였을 경우만 가능하다.
사용자등록	frmUserReg	사용자를 새로 등록한다. 사용자등록은 관리자 (Admin)으로 Login 하였을 경우만 가능하다.

여 백

제5장 향후추진계획

1. 단계별 추진계획
2. 활용방안
3. 기대효과

여 백

제5장 향후추진계획

1. 단계별 추진계획

- 농지정보화사업으로 통합운영을 위한 기반조성(공통)
-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과의 Data공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발
- 농지지번도전산화사업을 농지종합정보화 사업으로 전국확대 운영
- 타사업과 연계하여 활용범위를 다양화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DB 추가 구축
- 농지이용계획수립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주제도 등 구축
- 응용분야 시스템 개발

농지의 필지별 관리가 가능한 지형/지적도를 기반으로 토지관리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농지를 종합적으로 관리

-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관리 DB 구축
 - 사업대상 : 전국 232개 시군
 - DB 구축계획
 - 건교부 토지관리정보체계와 행자부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자료 공유 활용
 - 지형/지적 도형자료 공유
 - 농지관련 자료정비 및 DB 표준화
 - 연계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 농지원부시스템, RGIS 등과 연계 개발
 - 농업진흥지역도 및 농지전용 DB 연도별 구축 계획

제5장 향후추진계획

- 1단계(2000년까지) : 시범사업결과 전국확대 실시 확정
 - 4개 시군(진천군, 김해시, 순창군, 흥천군) DB 구축
- 2단계(2001년) : 15개 시군 구축
- 3단계(2002년) : 60개 시군 구축
- 4단계(2003년) : 75개 시군 구축
- 5단계(2004년) : 78개 시군 구축
- 추진기간 : 2001 ~ 2004
- 농지관련 업무 활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 농지이용계획수립
 - 농업진흥지역 적지선정여부 평가
 - 경지정리 대상지구 추출
 - 직접지불을 위한 조건불리 지역
 - 통계현황자료를 분석
 -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사항 관리
 - 농지전용허가(신고) 심사업무, 사후관리업무 지원
 - 농지이용증진사업(농지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 지원
 - 추진기간 : 2001 ~ 2004

2. 활용방안

사 업 명	사업목적	주요활용기관	비 고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인 에게 고시된 내용의 열람 및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농지법30조, 32조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농지전용 사후관리지원	농지전용한 농지에 관한 전 용사유·일자·면적·농지위 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전용목적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 후관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36조 :농지의 전용 허가·협의
농지이용실태 현황 파악	일선 행정기관에서 매년 실 시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 조사시 지적도면 활용과 처 분대상농지관리 및 농지변동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 지원	지방자치단체	농지법제10조 :농업경영에 이바지 아니 한 농지등의 처분
필지별농지 가격정보제공	농지가격 관련정보를 입력하 여 농지특성, 지가변동사항 등을 관리하여 농지의 가격 정보 제공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농지이용증진 사업 지원	농지매매사업, 농지장기임대 차사업, 농지교환·분합사업 대상 농지 파악 및 관리	중앙부처	농지법제14조 :농지이용증 진사업의시행
직접지불제 사업 지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으로 주변농지를 검색하여 적정한 농가 파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개발 관련 시설물 위치정보제공	· 농업용수 수해지역 관리 · 가뭄 및 홍·수해 대책 수립 · 농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 사업지원 등	중앙부처	

3. 기대효과

-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등의 농지관리 행정처리시간 단축으로
관련업무 능률개선 및 비용절감
-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로 주곡 자급기반 확충 뒷받침 및 합리
적인 농지정책수립 지원
- 건교부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과 공동 추진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신 기술의 농지정보 DataBase구축
- 필지 지적도면과 해당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
정처리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민원정보 제공

부 록

1. 테이블 내역
2. 사업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3. 지적관련시스템 추진현황

여 백

1. 테이블 내역

가. 테이블 목록

테 이 블 명	한글 테이블명	비 고
Addrdo_cd	행정구역상도코드	
Address_cd	행정구역 코드	
Daejang_cd	토지대장구분 코드	
Dongeo_cd	동거여부구분 코드	
Gubun_cd	농업진흥지역 구분 코드	
Jakmul_cd	주재배작물 코드	
Jimok_cd	지목 코드	
Jintype_cd	농업진흥지역 변경종류 코드	
Jinwhy_cd	농업진흥지역 변경사유 코드	
Junorg_cd	전용허가기관 코드	
Junstate_cd	전용상태 코드	
Juntype_cd	전용허가유형 코드	
Junwhy_cd	전용사유 코드	
Kgubun_cd	경작구분 코드	
Kjung_cd	경지정리 유무 코드	
Kwange_cd	가족관계코드	
ManGubun_cd	신청인구분코드	
NabGubun_cd	납입구분코드	
Nongachg_cd	농가변경사항코드	
Nongside_cd	농업외겸업 코드	
Own_cd	농지소유방법 코드	
Sundae_cd	선대영농여부 코드	
TInjeok	허가자 인적확인사항	
TJunyong 1	농지전용 허가대장	
TJunyong 2	농지전용 협의대장	
TJunyong 3	농지전용 신고대장	
TJunyong 4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TJunyong 5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TJunyong 6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대장	
TJunyongparcel 1	농지전용 허가 필지	

부 록

테이블명	한글테이블명	비 고
TJunyongparcel 2	농지전용 협의 필지	
TJunyongparcel 3	농지전용 신고 필지	
TJunyongparcel 4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허가필지	
TJunyongparcel 5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협의필지	
TJunyongparcel 6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필지	
TLanddocu	농업진흥지역 토지조서	
TLanddocuchange	농업진흥지역 토지조서 수정	
TLanddocuhistory	농업진흥지역 토지조서 이력	
AGCTNNGJMST	농가주 사항	
AGCTNNFAMST	농가구성원 사항	
AGCTNNJSMST	농지조서	
AGCTNMNGMST	농가소유농지	
AGCTNNRTMST	농가임차농지	
TSurround	소유자별 주변농지 현황	
Users	사용자관리	
lp_aa_ri	행정구역도 (리)	
lp_aa_emd	행정구역도 (읍면동)	
lp_pa_inx50	인텍스도 (1/5,000)	
lp_pa_inx10	인텍스도 (1/1,000)	
lp_pa_cbnd	연속지적도	
lp_pa_bbnd	편집지적도	
lt_c_ue101	농업진흥지역도	
lt_c_ue111	농지전용허가현황도	
lt_c_ue112	농지전용협의현황도	
lt_c_ue113	농지전용신고현황도	
lt_c_ue114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허가현황도	
lt_c_ue115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협의현황도	
lt_c_ue116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현황도	
lt_c_ua101	국토이용계획도	

부 록

테 이 블 명	TJunyong1 (농지전용허가대장)
자 료 형 태	문자자료

순서	필드명	필드설명	유 형	길 이	비고
1	Admin	허가기관코드	Varchar2	10	기본키
2	Jun_type	전용허가유형	Varchar2	2	기본키
3	Jun_org	허가기관코드	Varchar2	2	기본키
4	Jun_num	허가번호	Varchar2	6	기본키
5	Jun_yy	허가년도	Varchar2	4	기본키
6	Jun_ymd	허가일자	Date	8	
7	Man_gubun	신청인 구분	Varchar2	2	
8	Jumin	주민(법인)등록번호	Varchar2	13	
9	Jun_why	전용목적코드	Varchar2	2	
10	Jun_why2	전용목적2	Varchar2	40	
11	Totbusqu	총부지면적	Number	10.2	
12	Jun_squ	전용면적	Number	10.2	
13	Symd	전용착공일자	Date	8	
14	Eymd	전용준공일자	Date	8	
15	Jogun	허가조건	Varchar2	50	
16	Change	허가취소, 변경사항	Varchar2	50	
17	Josungbi	농지조성비	Number	13	
18	Budamkum	전용부담금	Number	13	
19	Susuryo	수수료	Number	13	
20	Nabbuymd	납부일자	Date	8	
21	Nab_gubun	납입구분코드	Varchar2	2	
22	Nab_ymd	납입기한	Date	8	
23	Munseo	통지근거	Varchar2	15	
24	Notice_num	통지번호	Varchar2	5	
25	Notice_ymd	통지일자	Date	8	
26	Cancel_ymd	취소일자	Date	8	
27	Cancel_why	취소사유	Varchar2	20	
28	Ch_why	변경사유	Varchar2	20	
29	Gita	비고	Varchar2	100	

테 이 블 명	TJunyong2 (농지전용협의대장)
자 료 형 태	문자자료

순서	필드명	필드설명	유 형	길 이	비 고
1	Admin	협의기관코드	Varchar2	10	기본키
2	Jun_type	전용허가유형	Varchar2	2	기본키
3	Jun_org	협의기관코드	Varchar2	2	기본키
4	Jun_num	협의번호	Varchar2	6	기본키
5	Jun_yy	협의년도	Varchar2	4	기본키
6	Jun_ymd	협의일자	Date	8	
7	Man_gubun	신청인 구분	Varchar2	2	
8	Jumin	주민(법인)등록번호	Varchar2	13	
9	Jun_Reg_Org	협의요청기관	Varchar2	20	
10	Munse_j	접수문서번호	Varchar2	15	
11	Munse_b	발송문서번호	Varchar2	15	
12	Way_org	경유기관	Varchar2	20	
13	Saup_sihang	사업시행근거(법령및사업명)	Varchar2	20	
14	Jun_why	전용목적코드	Varchar2	2	
15	Jun_why2	전용목적2	Varchar2	40	
16	Totbusqu	총부지면적	Number	10.2	
17	Jun_squ	전용면적	Number	10.2	
18	Symd	전용착공일자	Date	8	
19	Eymd	전용준공일자	Date	8	
20	Jogun	동의조건	Varchar2	50	
21	Change	동의의취소, 변경사항	Varchar2	50	
22	Josungbi	농지조성비	Number	13	
23	Budamkum	전용부담금	Number	13	
24	Nabbuymd	납부일자	Date	8	
25	Nab_gubun	납입구분코드	Varchar2	2	
26	Nab_ymd	납입기한	Date	8	
27	Notice_num	통지번호	Varchar2	5	
28	Notice_ymd	통지일자	Date	8	
29	Cancel_ymd	취소일자	Date	8	
30	Cancel_why	취소사유	Varchar2	20	
31	Ch_why	변경사유	Varchar2	20	
32	Gita	비고	Varchar2	100	

부 록

테 이 블 명	TJunyong3 (농지전용신고대장)
자 료 형 태	문자자료

순서	필드명	필드설명	유 형	길 이	비 고
1	Admin	신고기관코드	Varchar2	10	기본키
2	Jun_type	전용허가유형	Varchar2	2	기본키
3	Jun_org	신고기관코드	Varchar2	2	기본키
4	Jun_num	신고번호	Varchar2	6	기본키
5	Jun_yy	신고년도	Varchar2	4	기본키
6	Jun_ymd	신고일자	Date	8	
7	Man_gubun	신청인 구분	Varchar2	2	
8	Jumin	주민(법인)등록번호	Varchar2	13	
9	Jun_why	전용목적코드	Varchar2	2	
10	Jun_why2	전용목적2	Varchar2	40	
11	Totbusqu	총부지면적	Number	10.2	
12	Jun_squ	전용면적	Number	10.2	
13	Symd	전용착공일자	Date	8	
14	Eymd	전용준공일자	Date	8	
15	Rep_basis	농지전용신고근거	Varchar2	3	
16	Rep_num	농지법 시행령	Varchar2	1	
17	Jogun	신고수리조건	Varchar2	50	
18	Susuryo	수수료	Number	13	
19	Josungbi	농지조성비	Number	13	
20	Budamkum	전용부담금	Number	13	
21	Munseo	문서번호	Varchar2	15	
22	Notice_num	통지번호	Varchar2	5	
23	Notice_ymd	통지일자	Date	8	
24	Nabbuymd	납부일자	Date	8	
25	Nab_gubun	납입구분코드	Varchar2	2	
26	Nab_ymd	납입기한	Date	8	
27	Cancel_ymd	취소일자	Date	8	
28	Cancel_why	취소사유	Varchar2	20	
29	Ch_why	변경사유	Varchar2	20	
30	Gita	비고	Varchar2	100	

테 이 블 명	TJunyong4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허가)
자 료 형 태	문자자료

순서	필드명	필드설명	유 형	길 이	비고
1	Admin	일시사용허가기관코드	Varchar2	10	기본키
2	Jun_type	전용허가유형	Varchar2	2	기본키
3	Jun_org	일시사용허가기관코드	Varchar2	2	기본키
4	Jun_num	일시사용허가번호	Varchar2	6	기본키
5	Jun_yy	일시사용허가년도	Varchar2	4	기본키
6	Jun_ymd	일시사용허가일자	Date	8	
7	Man_gubun	신청인 구분	Varchar2	2	
8	Jumin	주민(법인)등록번호	Varchar2	13	
9	Jun_why	전용목적코드	Varchar2	2	
10	Jun_why2	전용목적2	Varchar2	40	
11	Totbusqu	총부지면적	Number	10.2	
12	Jun_squ	전용면적	Number	10.2	
13	Jogun	허가조건	Varchar2	50	
14	Symd	전용착공일자	Date	8	
15	Eymd	전용준공일자	Date	8	
16	Mon_ymd	예치일자	Date	8	
17	Mon_how	예치방법	Varchar2	20	
18	Mon_quantity	예치금액	Number	15	
19	Rec_ymd	복구일자	Date	8	
20	Return_ymd	반환일자	Date	8	
21	Return_mon	반환금액	Varchar2	15	
22	Cancel_ymd	취소일자	Date	8	
23	Cancel_why	취소사유	Varchar2	20	
24	Ch_why	변경사유	Varchar2	20	
25	Gita	비고	Varchar2	100	

부 록

테 이 블 명	TJunyong5 (농지전용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대장)
자 료 형 태	문자자료

순서	필드명	필드설명	유 형	길 이	비고
1	Admin	일시사용협의기관코드	Varchar2	10	기본키
2	Jun_type	전용허가유형	Varchar2	2	기본키
3	Jun_org	일시사용협의기관코드	Varchar2	2	기본키
4	Jun_num	일시사용협의번호	Varchar2	6	기본키
5	Jun_yy	일시사용협의년도	Varchar2	4	기본키
6	Jun_ymd	일시사용협의일자	Date	8	
7	Man_gubun	신청인 구분	Varchar2	2	
8	Jumin	주민(법인)등록번호	Varchar2	13	
9	Jun_why	전용목적코드	Varchar2	2	
10	Jun_why2	전용목적2	Varchar2	40	
11	Totbusqu	총부지면적	Number	10.2	
12	Jun_squ	전용면적	Number	10.2	
13	Jogun	허가조건	Varchar2	50	
14	Symd	전용착공일자	Date	8	
15	Eymd	전용준공일자	Date	8	
16	Mon_ymd	예치일자	Date	8	
17	Mon_how	예치방법	Varchar2	20	
18	Mon_quantity	예치금액	Number	15	
19	Rec_ymd	복구일자	Date	8	
20	Return_ymd	반환일자	Date	8	
21	Return_mon	반환금액	Varchar2	15	
22	Cancel_ymd	취소일자	Date	8	
23	Cancel_why	취소사유	Varchar2	20	
24	Ch_why	변경사유	Varchar2	20	
25	Jen_reg_org	협의요청기관	Varchar2	20	
26	Saup_sihang	사업이행근거(법령및사업명)	Varchar2	20	
27	Gita	비고	Varchar2	100	

테 이 블 명		TJunyong6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대장)			
자 료 형 태		문자자료			
순서	필드명	필드설명	유 형	길 이	비고
1	Admin	변경승인기관코드	Varchar2	10	기본키
2	Jun_type	전용허가유형	Varchar2	2	기본키
3	Jun_org	변경승인기관코드	Varchar2	2	기본키
4	Jun_num	변경승인번호	Varchar2	6	기본키
5	Jun_yy	변경승인년도	Varchar2	4	기본키
6	Jun_ymd	변경승인일자	Date	8	
7	BF_org	변경전허가기관코드	Varchar2	10	
8	BF_jun_yy	변경전허가년도	Varchar2	4	
9	BF_jun_num	변경전허가번호	Varchar2	6	
10	BF_jum_ymd	변경전허가일자	Date	8	
11	BF_gubun	변경전허가구분코드	Varchar2	2	
12	Man_gubun	신청인 구분	Varchar2	2	
13	Jumin	주민(법인)등록번호	Varchar2	8	
14	Jun_why	전용목적코드	Varchar2	2	
15	Jun_why2	전용목적2	Varchar2	40	
16	Totbusqu	총부지면적	Number	10.2	
17	Jun_squ	전용면적	Number	10.2	
18	Symd	전용착공일자	Date	8	
19	Eymd	전용준공일자	Date	8	
20	Josungbi	농지조성비	Number	15	
21	Nabbuymd	납부일자	Date	8	
22	Budamkum	전용부담금	Number	15	
23	Nab_gubun	납입구분코드	Varchar2	1	
24	Nab_ymd	납입기한	Date	8	
25	Notice_num	통지번호	Varchar2	5	
26	Notice_ymd	통지일자	Date	8	
27	Cancel_ymd	취소일자	Date	8	
28	Cancel_why	취소사유	Varchar2	20	
29	Ch_why	변경사유	Varchar2	20	
30	Gita	비고	Varchar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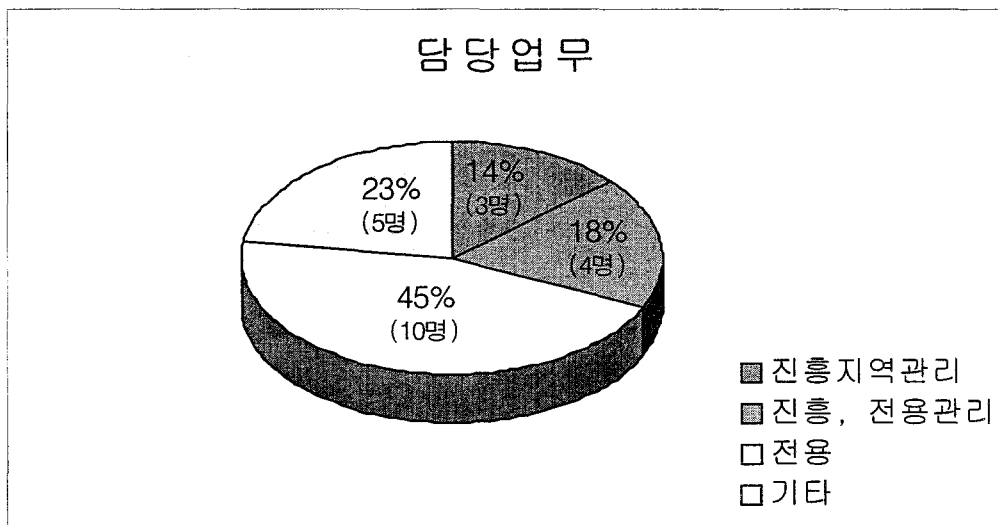
부 록

테 이 블 명	TJunyongparcel3 (농지전용 신고필지)
자 료 형 태	문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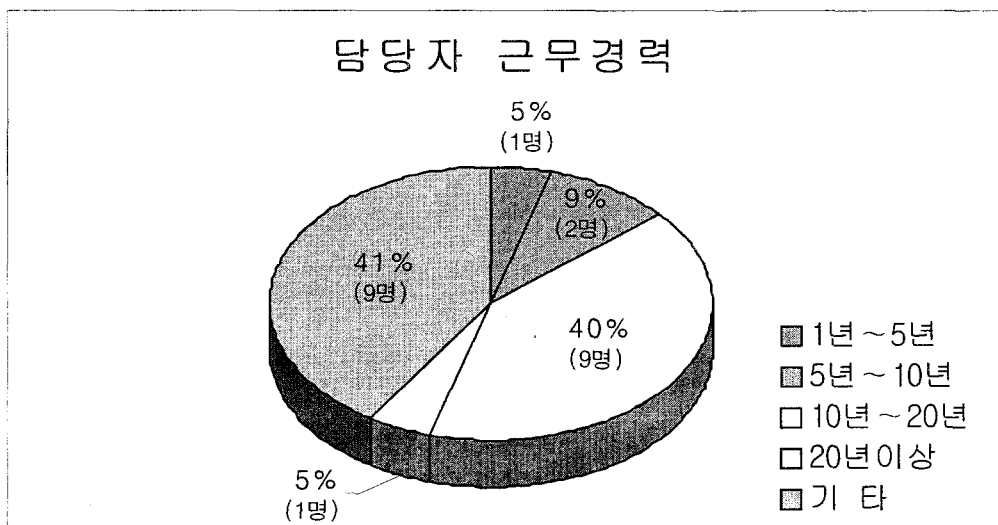
순서	필드명	필드설명	유 형	길 이	비고
1	Admin	신고기관코드	Varchar2	10	기본키
2	Jun_type	전용유형코드	Varchar2	2	기본키
3	Jun_org	전용신고기관코드	Varchar2	2	기본키
4	Jun_num	신고번호	Varchar2	6	기본키
5	Jun_yy	신고년도	Varchar2	4	기본키
6	Jun_ymd	신고일자	Date	8	
7	Parcel_admin	농지소재지코드(리까지)	Varchar2	10	
8	Daejang	대장구분코드	Varchar2	1	
9	Bonbun	본번	Number	4	
10	Bubun	부번	Number	4	
11	Jimok	지목코드	Varchar2	2	
12	Square	필지총면적	Number	10.2	
13	Jun_squ	필지전용면적	Number	10.2	
14	Gubun	농업진흥지역구분	Varchar2	2	
15	State	전용상태	Varchar2	1	
16	Adminri	소재지리(2리,3리구분)	Varchar2	4	
17	In_square	증가면적	Number	10.2	
18	De_square	감소면적	Number	10.2	
19	Crop_cd	주재배 작물	Varchar2	2	
20	Keyfield	키필드	Varchar2	39	

2 사업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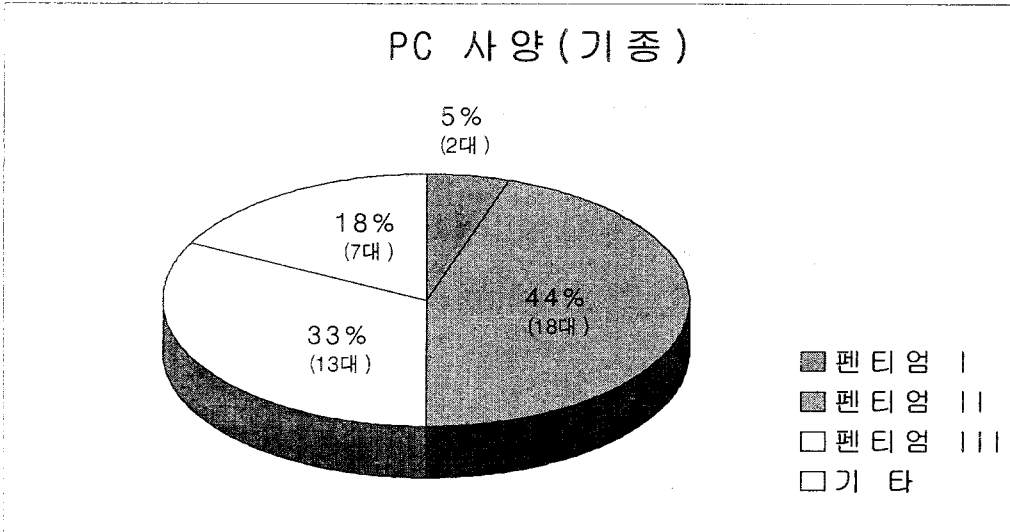
□ 설문작성자 담당업무현황



□ 설문작성자 담당자 근무경력 현황



□ 부서 PC사양 현황



□ 농업진흥지역 관리업무에 활용 할 경우 활용업무는(세부적으로) :

기 관	답 변 내 용
군산시청	· 농업진흥지역 변동자료 관리
익산시청	· 전용신청시 진흥지역 유무확인 · 해제/지정시 관리에 편리
의성군청	· 농지전용 허가, 신고시 · 민원증명 발급 온라인가능
수원시청	· 농지전용시 농지전용 제한 대상지 여부 · 농지 불법전용 여부 활용
군포시청	· 구역, 지목별면적, 농가별면적, 작물별면적 등 현황과 약 및 통계자료
전주시청	· 진흥지역관리(도시계획 발급)
순천시청	· 농업진흥지역 중 전용농지 조회
임실군청	· 농지전용신고, 허가, 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용 도 변경승인
광양시청	· 진흥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시 농지능력 구분도

농지전용관리업무에 활용 할 경우 활용업무는(세부적으로) :

기 관	답 변 내 용
의성군청	· 불법 전용관리 용이 · 허가, 신고 내역 수지 확인으로 행정력 제고
군포시청	· 농지유용별, 용도별, 지목별, 소유자별(개인·기관등) 면적별현황, 통계자료
전주시청	· 전용대장 관리
순천시청	· 농지전용시 진흥지역위치 조회 및 경지정리 농지인가 의 유부
임실군청	· 농지전용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지이용 실태조사

확대 개발시 시·군 또는 읍·면에서 지적도와 연계하여 향후 농촌행정
업무중 활용가능 분야는 ?

기 관	답 변 내 용
군산시청	· 농업진흥지역 변동자료 관리
의성군청	· 전산화로 인한 민원 행정 서비스 확대
수원시청	· 농지이용 실태조사 · 논농업 직접지불제 · 친환경 농업 · 농지전용
전주시청	· 농지관리 및 이용계획 중복에 따른 낭비를 줄 일 수 있음
순천시청	· 지적부서에서 지적도대장 발급 없이도, 편리하게 열람 가능

부 록

본 시스템에 추가 및 보완할 사항

기 관	답 변 내 용
군산시청	· 농업진흥지역 변동자료 관리
의성군청	· 개인별 소유농지(전국) 조화로 업무추진 원활 조기 완료 요망
전주시청	· 토지대장의 소유권 이전이 입력되면 연도별로 지번이 출력되고 도면에 표시되었으면 이용실태조사시 용이 하겠음.
순천시청	· 농업용수개발 농지표시, 시스템보완 개발
광양시청	· 지적도상 분할된 농지상황(변경일자)이 진흥지역관리 조서(농지)상 나타날 수 있도록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에서 농지전용관련 자료는 어느 시점부터 입력·관리하고 있는지

기 관	답 변 내 용
군산시청	·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익산시청	·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의성군청	· 1993년부터 2000년 9월말까지
서귀포시청	·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청	·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고양시청	·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청	· 1996년부터 현재까지
순천시청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임실군청	· 1996년부터 현재까지
광양시청	·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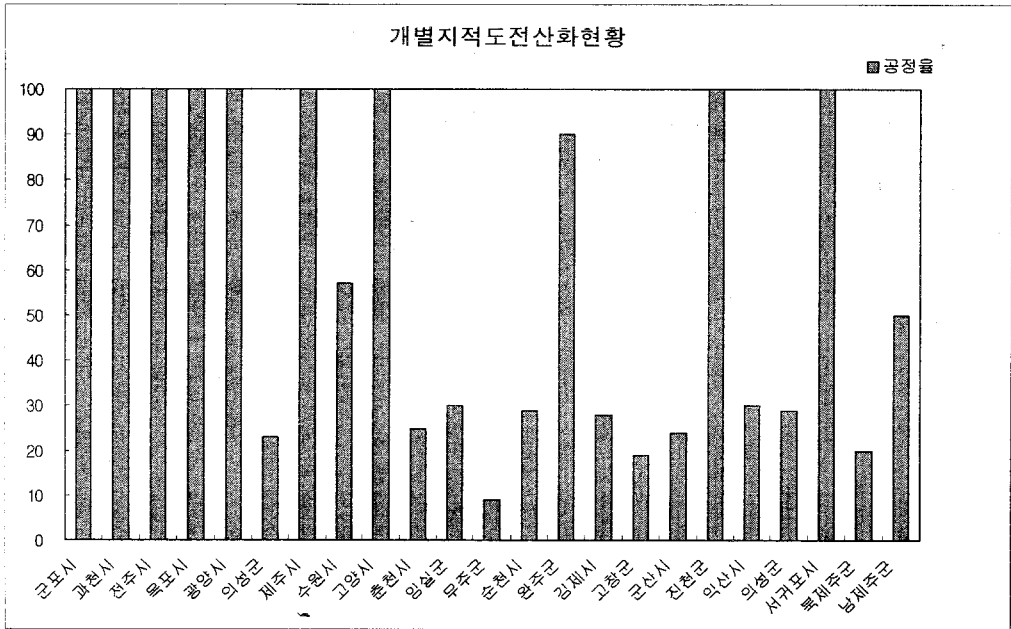
□ 시·군청이 2001년 농지종합정보화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견

기 관	답 변 내 용
군산시청	· 선정희망
익산시청	·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업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성군청	· 선정시 예산미확인 · 확보시 군비 부담을 줄여 주시길
수원시청	· 도농 복합시에 시범사업 실시후 각 시군에 전화요망
군포시청	· 업무담당자에 대한 농촌행정시스템 운영 및 세부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과천시청	· 담당자 1인이 농지원부·농지전용 관련업무를 모두 담당하여 무척 바쁜 관계로 타(신규)업무는 없었으면.....
고양시청	· 우선적으로 선정해주기 바람
전주시청	· 토지 정보화·전산화가 완료 단계에 있으므로 연계하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순천시청	· 가능한 빠른시일 이내에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기를 희망
임실군청	· 대상지 선정에 긍정적임
광양시청	·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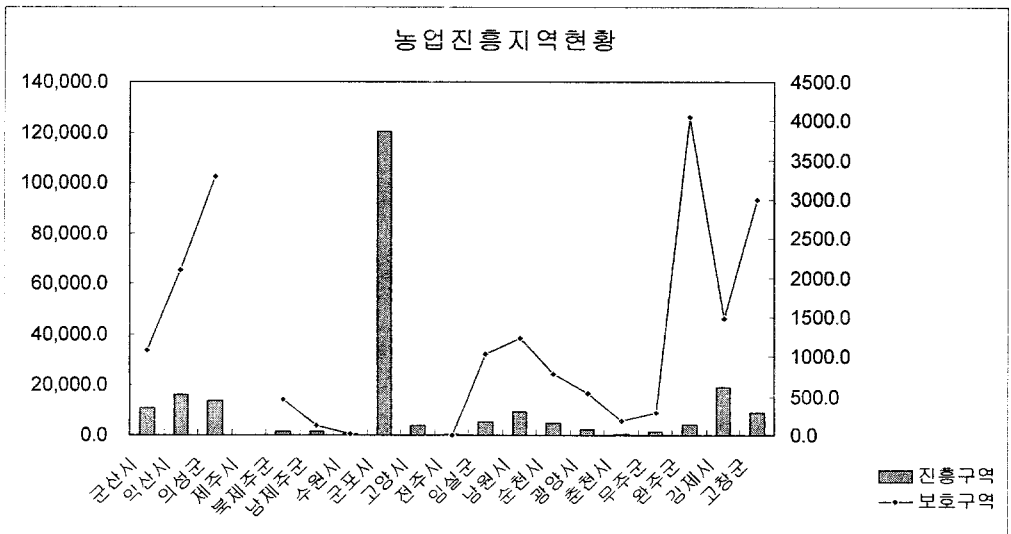
□ 건의사항

기 관	답 변 내 용
군산시청	· 농업진흥지역 변동자료 관리
고양시청	· 전면적인 교육필요
순천시청	· 시스템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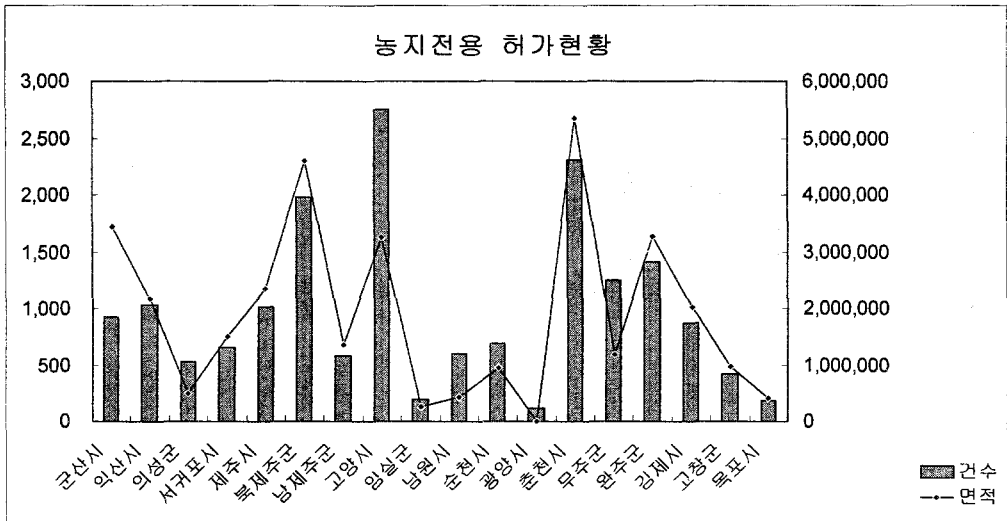
□ 개별지적도 전산화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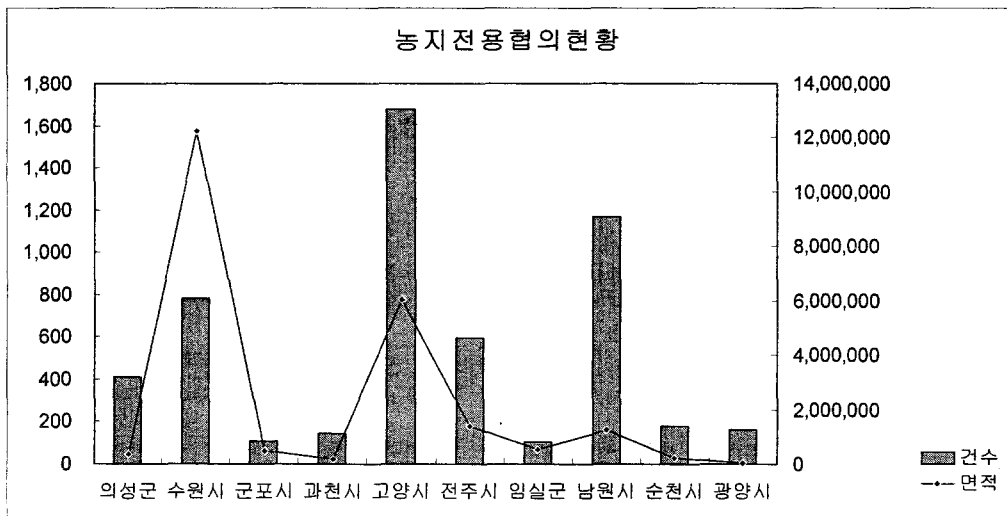
□ 농업진흥지역현황(진흥구역, 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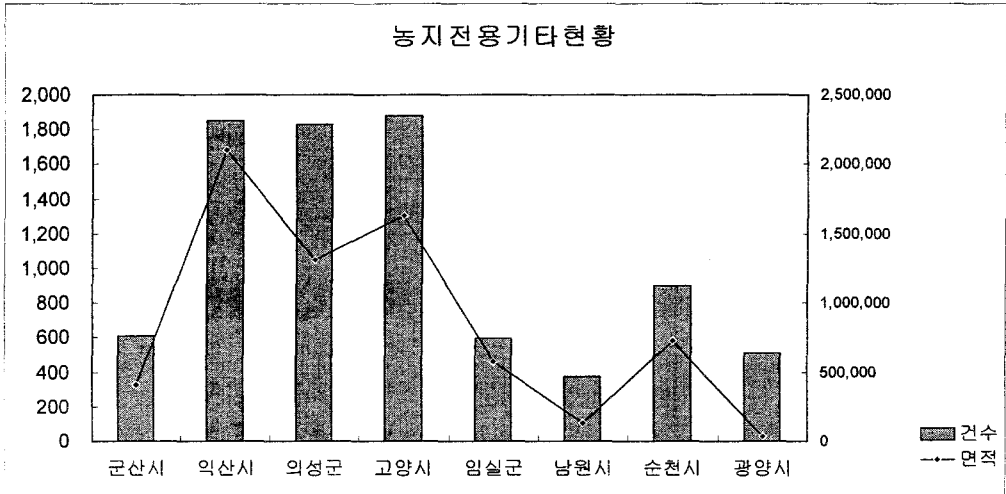
□ 농지전용 허가현황(건수, 면적)



□ 농지전용 협의현황(건수, 면적)



□ 농지전용 기타현황(건수, 면적)



□ 지자체서버 자원현황(전산실)

기 관	기 종	C P U	Main Memo ry	H.D.D	설치S/W (DBMS)	용 도	도입 연도
전북 군산시	IBM Netfinity 8500R	500MHz*4	4GB	50GB	Oracle 8.0.6 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6
전북 익산시	IBM Netfinity 8500R	500MHz*8	8GB	50GB	Oracle 8.0.6 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6
경북 의성군	IBM Netfinity 8500R	500MHz*6	6GB	180GB	Oracle 8.0.6 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5
제주 서귀포시	UX10000(현대)	500MHz*4	2GB	126GB	Oracle 8.0.1 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5
제주 제주시	LGS38000(LG)	500MHz*4	1GB	50GB	Oracle 7.3.4 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1
제주 북제주군	IBM Netfinity 8500R	500MHz*4	2GB	50GB	Oracle 8.0.6 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7
제주 남제주군	SSM8000(삼성)	400MHz*4	1GB	50GB	Oracle 7.3.4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1999.6
경기 수원시	SSM8000(삼성)	400MHz*6	4GB	180GB*2	Oracle 8.0.4 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1999.6
경기 군포시	UX10000(현대)	500MHz*4	1GB	87GB	Oracle 8.0.5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1999.12
	HPJ7000	440MHz*4	4GB	18GB*2	Oracle 8.1.5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2000.4. 17
경기 과천시	SSM8000/200	400MHz*4	6GB	180GB	Oracle 7.3.4 Entra MF-Cobol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1999.1
	K260-EG(HP)	180MHz*2	21GB	21GB	Oracle 8.1.6 ARCSDE 8.0 ARC/INFO 8.0	토지관리 정보체계	1997.4
경기 고양시	LGS-38000	500MHz*2	2GB	135GB	UNIXWARE 7.1.0 Oracle 8.0.5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1
	HP	200MHz*2	1GB	40GB	HP-UX10.20 Spatial ware MapInfo	토지관리 정보체계	1999

부 록

기 관	기 종	C P U	Main Memory	H.D.D	설치S/W (DBMS)	용 도	도입 연도
전북 전주시	SunEnterprise 5500	440MHz*2	1GB	18.2GB	Oracle 8.0 ARC/SDE	토지관리 정보체계	2000
	SSM-8300	500MHz*2	2GB	27GB	Oracle 8.0.5 미들웨어(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5
전북 임실군	L-2000(HP)	512MHz*4	2GB	18GB	Oracle 8.0.5 미들웨어(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
전북 남원시	L-IBM Netfinity8500R	500MHz*6	2GB	288GB	Oracle 8.0.6 미들웨어(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6
전남 순천시	LGS-38000/E2	550MHz*4	2GB	120GB	SCOUNIXWARE 7.1.0 미들웨어(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3
전남 광양시	LGS-38000	500MHz*4	2GB	40GB	Oracle 8.0.5 미들웨어(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2
강원 춘천시	HP N4000	550MHz*8	4GB	216GB	Oracle 8.0.6 미들웨어(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6
전북 무주군	IBM-Netfinity 8500R	550MHz*6	4GB	200GB	Oracle 8.0.6 미들웨어(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6
전북 완주군	DTC2000	500MHz*4	3GB	18.2GB (180GB)	Oracle 8.0.4 SSD, Entra 보완 S/W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1999.10
전북 김제시	NF8500R	550MHz*8	8GB	180GB	Oracle 8.0 미들웨어(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000.5
전북 고창군	SSM8000	450MHz*4	2GB	4.3GB*2EA (220GB)	Oracle 8.0 미들웨어(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1999.9
전남 목포시	LGS38000	500MHz*4	2GB	18GB (180GB)	Oracle 8.0.5 미들웨어(Entra)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1999.11

□ 농업진흥지역 현황

(단위 :ha)

기 관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농지	비농지	계	농지	비농지
전북 군산시	11,183.3	10,892.5	290.8	1,079.5	1,008.4	71.1
전북 익산시	16,341.6	15,166.6	1,175.0	2,099.0	1,674.7	424.3
경북 의성군	13,857.4	12,880.6	976.8	3,289.0	2,975.2	313.8
제주 서귀포시	-	-	-	-	-	-
제주 제주시	228.5	213.9	14.6	-	-	-
제주 북제주군	1267.0	1,089.6	177.4	459.3	394.7	64.6
제주 남제주군	1512.8	1,255.6	257.2	130.7	129.8	0.9
경기 수원시	440.0	438.0	2.0	20.0	20.0	-
경기 군포시	120,402	110,574	9,828	-	-	-
경기 과천시	-	-	-	-	-	-
경기 고양시	3779.3	3010.5	768.8	-	-	-
전북 전주시	613.3	551.1	62.2	1.5	1.5	-
전북 임실군	5,421.9	4,658.3	763.6	1,042.2	869.0	173.2
전북 남원시	9,754.9	8,750.1	1,004.8	1,240.3	1,112.5	127.8
전남 순천시	4,846.2	4,433.4	412.8	794.8	697.3	97.5
전남 광양시	2,319.9	2,093.4	226.5	547.7	429.1	118.6
강원 춘천시	634.4	602.6	31.8	178.1	169.1	9.0
전북 무주군	1,561.9	1,166.7	395.2	290.9	217.3	73.6
전북 완주군	4,501.8	4,051.6	450.2	4,053.5	3,447.8	605.7
전북 김제시	19,285.4	18,321.1	964.3	1,485.5	1,411.2	74.3
전북 고창군	9,331.1	8575.2	75.6	2,994.3	2,751.7	242.6
전남 목포시	-	-	-	-	-	-

3 지적관련시스템 추진현황

가. 총괄

사업명 구분	지적도면전산화	공시지가시스템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주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관련부서	지적과	지가제도과	토지관리과
시행주체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추진기간	'99~2003(예정)	'97~2000(예정)	'98~2001(예정)
대상매수	748,000매	757,603매	748,000매
사업비	1,058억원	59억	2,200억원
재원부담	국가·지방 공동분담	국고	국가·지방 공동분담
자료공유에 관한 입장	자료공유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기금 제공하 기는 법적·제도적 장 치가 필요함	자료공유를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시·군 지가제도 관련부서)에 적극 협조를 원칙적으로 하되 시군구와 긴 밀한 협의를 통하 여 사용	자료공유는 원칙적으 로 하고 농지관리분야 에 대한 자료검증 등 공유체제 유지

나. 지적도면전산화

(1) 추진배경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토지정보시스템 조기구축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 지적도면전산화를 추진함

(2) 추진경위

- 토지대장전산화 완료(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시 '90.4)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적도면전산화계획포함 ('94.5)
- 지적도면전산화 시범사업 실시 ('96.1~'97.12)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 확정('97.5)

(3) 추진방침

- 지적도면을 사전 정비하여 정확한 자료 구축
- 지적측량대행기관을 도면제작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 지적도면수치화일 제작은 공무원과 전담기관 공동추진
 -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지적도면전산화 표준장비 설치
- 도면제작 및 장비운영교육을 단계적으로 전직원에게 실시

(4) 추진체계

- 사업총괄 : 행정자치부
- 사업주관 : 시·도
- 사업집행 : 시·군·구
- 전담기관 : 대한지적공사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2003(5년간)
- 사업량 : 전국 지적·임야도 전량(748천장)
- 소요예산 : 1,058억원

(6) 추진내용

- 1단계 (1998 ~1999)
 - 전국 지적·임야도 19천장 수치화일 제작
 - 지적도면 표준전산 장비구입 : 16개 시도, 260개 시군구
 - ※ '98예산 60억(국비 50%, 지방비 50%)
- 2단계 (2000)
 - 전국 지적·임야도 159천장 수치화일 제작
 - 지적도면 표준전산 장비(전국 5개소에 입·출력장비)구입 및 설치
 - ※ 2000 예산 104억(국비 50%, 지방비 50%)
- 3단계 (2001 이후)
 - 전국 지적·임야도 570천장 수치화일 제작 및 D/B구축
 - 지적도면 표준전산 장비 구입 및 설치(전국 시·도 및 시·군·구)
 - 전국 온라인 통신망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다.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1) 추진경위

- '90년도 이후 지적도상에 개별토지에 대한 산정지가 기재
- 개별공시지가를 제한된 기간 내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수작업에 따른 많은 불편초래
- '96. 3 제116차 행정쇄신실무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지가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작성지침을 마련하도록 의결
- '96. 6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제작 국비지원-건의(시·도)
- '96.11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제정·시행

(2) 추진현황

-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국비지원(천공비 제외)
 - '97년도 1,137,500천원
 - '98년도 1,575,000천원
 - '99년도 1,575,000천원(지제 58323-4, '99. 1. 6)
 - 2000년도 1,575,000천원 예정
- ※ 총 59억원 기집행 27억원, '99년도 16억원, 2000년도 계획 16억원
- '98. 9. 1일 기준 전국 757,603도엽중에서 64.5%인 488,983도엽을 전산화

(3) 지가현황도면 작성관련 감사결과

- 감사개요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예산낭비 및 시행착오를 사전예방
 - 감사내용 : 토지 및 지리정보사업 추진실태 등
 - 감사기간 : '98. 8. 24 ~10.29
 - 감 사 관 : 감사원 구책사업단 제1과 이종철 감사관외 12명
- 실태 및 문제점
 -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지가제도과), 지적도 전산화(행정자치부 지적과) 및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토지관리과)이 공동 추진되지 않고 있어 상호중복 및 예산낭비우려

라. 토지관리정보체계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복잡다기한 토지관련법률(78개)과 용도지역·지구(169개)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정보를 현행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는 알려주기에 부족하고
- 토지관련업무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가 상존함
- (나) 토지와 관련한 도형·속성·법률자료 등을 통합DB로 구축하고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산화함으로써
-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토지관련업무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실시간(Real-Time)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토지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제공되는 개별 필지별 토지이용정보를 확대 제공(현행 8가지 → 개선 16가지)함과 함께 온라인 원격지 발급 및 무인자동 발급 등이 가능토록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2) 추진개요

▣ 총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 '98년~2001년 <예정>
- (나) 총사업비 : 2,200억원(국가 1,200억원, 지방 1,000억원) <추정>
- (다) 사업범위 : 토지관련업무의 전산화와 통합DB 및 전산망 구축

▣ '98 시범사업개요

- (가) 사업지역: 대구광역시 남구
- (나) 사업비: 11억원(학술 3, 기술 8)
- ※ 기술은 물품 및 용역 일괄처리

(다) 사업기간: '98. 2월~12월

(라) 사업범위: 토지관련업무의 전산화와 통합DB 및 전산망 구축

▣ '99 1차 확산보급사업

(가) 사업지역 :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군포시,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전북 전주시·순창군, 전남 목포시·광양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제주
제주시

(나) 사업비 : 44억원(학술 3, 기술 41)

※ 기술은 물품 및 용역 일괄처리

(다) 사업기간 : '99. 9월 ~ 2000. 4월

(라) 사업범위 : 토지관련업무의 전산화와 통합DB 및 전산망 구축

▣ 2000년 2차 확산보급사업

(가) 사업지역: 서울시(24개구), 부산시(16개구), 울산남구, 경기수원시,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북 완주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임실군, 전북 고창군, 제주 서귀포시, 제주 북제주군, 제주 남제주군

(나) 선정기준: 전산자원(데이터베이스, H/W, S/W 등), 인력, 단체장의 의지 등

(3)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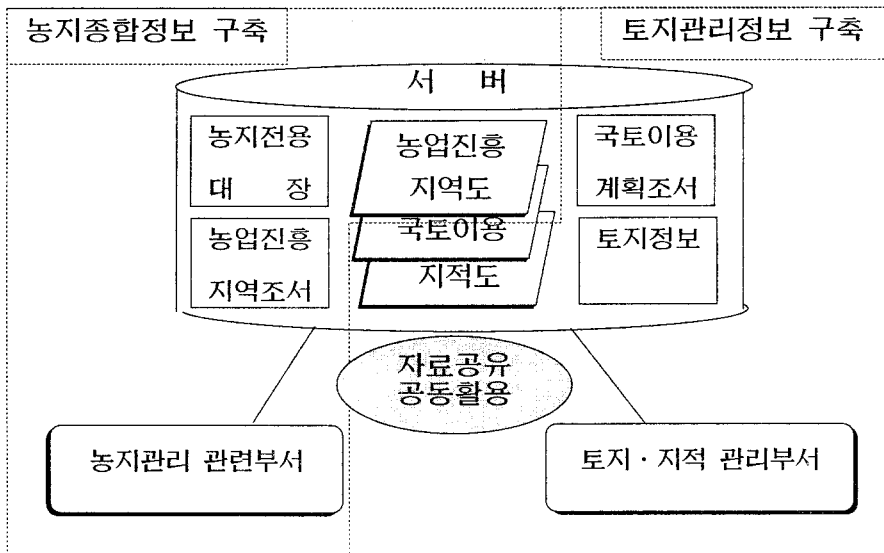
- 토지관련 공간자료와 속성자료, 법률자료 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시스템(토지행정업무시스템, 토지정책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함(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시·군·구 중심)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적도 : 개별지적도, 연속지적도, 편집지적도
 - 지형도 : 도로, 건물, 하천, 등고, 시설물등
 - 주제도(용도지역·지구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지이용구분도, 상수원보호구역도, 조수보호구역도 등
 - 속성자료 : 공부, 대장, 서식이 요구하는 속성자료, 지가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자료 등
 - 법률자료 :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동산 중개업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78개 법률(169개 용도지역·지구관련법률)

- 메타데이터 : 외부(활용에 초점), 내부(자료의 생산·관리), 메타데이터
- 응용프로그램 개발
 - 토지행정지원시스템 : 개발이익환수, 토지거래, 용도지역·지구관리, 부동산 중개업무, 외국인토지업무, 공시지가업무등
 - 토지정책지원시스템 : 부동산투기관리, 토지관련 법률관리,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관리 등 정책업무

마. 농지종합정보와 토지관리정보체계와 연계추진

(1) 목적

- 자료 공유 및 중복투자 방지
 - 자료구축
 - 토지관리정보체계 : 지형도, 지적도, 국토이용계획도 등
 - 농지종합정보시스템 : 농업진흥지역도, 농지전용 등 농지관련자료
 - 구축한 자료는 상호간의 자료를 공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



자료의 불일치 해소 및 일관성 확보

- 농업진흥지역도와 국토이용계획용도간의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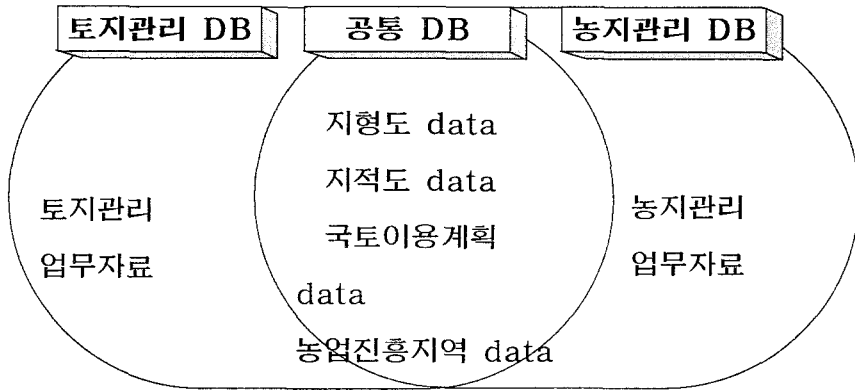
호간의 불일치지역 발생하는데 논리적인 문제를 도출한 후 공동(농림부, 건설교통부)으로 해결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민원 업무를 지원

□ 사업대상지역 공동 선정으로 기대효과 극대화

- 농지지번도사업 사업대상은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 중인 지역을 선정하여 업무추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

(2) 연계추진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유지관리
 - 지형도, 지적도, 국토이용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등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공유
 - 농업진흥지역도는 농지지번도 전산화사업에서 구축하며, 지형도·주제도 등은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구축하되, 자료는 공유 또는 공동활용



- 농업진흥지역도는 농지관리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지형도·주제도 등은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유지관리
- 국토이용계획도와 농업진흥지역도의 일관성을 확보
- 응용시스템 개발
 - 국토이용계획도와 농업진흥지역도의 일관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